

資產再評價制度의 評價와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國際化·開放化를 맞이하여 기업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國際 競爭力을 提高하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企業은 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스스로 개혁하여야 하고, 政府는 기업과 관련된 제도 중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資產再評價制度는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政策課題 중의 하나이다. 政府는 이미 新經濟 5個年計劃을 통하여 資產再評價制度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資產再評價制度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本 研究에서는 資產再評價制度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檢討·分析하여 새로운 政策方向을 모색하였다. 資產再評價制度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우리의 현실에서, 本 研究는 基礎資料를 確保하고 이를 深層의으로 分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수립하는 政策立案者 및 相關분야에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는 學界 및 研究者에게 귀중한 文獻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本 研究는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본 연구에 필요한 기업별 재무자료를 제공해 주신 韓國信用情報株式會社와 기업실태조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大韓商工會議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연구 초기단계부터 가졌던 많은 토의에 기꺼이 응해주신 西江大 郭泰元 教授, 三逸會計法人의 林鎮澤 常務에게 감사를 보내며, 아울러 本 研究院에서 개최되었던 政策討論會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資

料整理 및 分析에 커다란 도움을 준 본 연구원의 成周錫, 李起鏞 研究員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李賢暎 研究助員에게 謝意를 표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著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 長 崔 洸

目 次

I. 序論	11
II. 資産再評價制度의 變遷過程 및 文獻考察	14
1. 資産再評價制度의 變遷過程	14
2. 資産再評價 關聯研究의 文獻考察	18
III. 資産再評價의 現況과 特性	24
1. 資産再評價의 規模	24
2. 資産種類別 資産再評價의 現況	31
3. 資産再評價制度 運用實態의 特徵	36
4. 資産再評價制度의 財務構造 改善效果	39
IV. 資産再評價制度에 對한 企業調査 結果	45
1. 調査概要	45
2. 調査對象業體의 特性 및 再評價의 實態	46
3. 資産再評價의 效果 및 再評價差額의 比較	49
4. 都賣物價指數에 對한 見解	54
5. 資産再評價 節次의 問題點	55
6. 任意性 問題	60
7. 資産再評價制度에 對한 綜合的 建議	64
8. 企業調査結果 要約	67

V. 資產再評價制度的 經濟的 效果	68
1. 資產再評價制度的 便益과 費用	68
2. 減價償却制度的 經濟的 效果	70
3. 舊減價償却制度下에서 資產再評價制度的 經濟的 效果	72
4. 新減價償却制度下에서 資產再評價制度的 經濟的 效果	75
5. 分析 結果	76
6. 結論	89
VI. 資產再評價制度的 問題點 및 改善方向	90
1. 資產再評價制度的 問題點	90
2. 資產再評價制度的 改善方向	98
VII. 結 論	101
參 考 文 獻	103
附錄 I. 日本의 再評價額과 帳簿價額의 比較	106
附錄 II. 企業實態調查 調查表	107

表 目 次

〈表 II - 1〉 資產再評價法の 沿革	16
〈表 II - 2〉 資產再評價法の 改正 内容	17
〈表 II - 3〉 資產再評價 關聯 先行研究 要約	22
〈表 III - 1〉 資產再評價의 現況	25
〈表 III - 2〉 法人當 再評價의 平均值	26
〈表 III - 3〉 資本 總計 對比 再評價差額의 比較	27
〈表 III - 4〉 再評價差額에서 移越缺損金의 比率	28
〈表 III - 5〉 再評價額과 帳簿價額의 差異	29
〈表 III - 6〉 上場法人 財源別 無償增資 現況	30
〈表 III - 7〉 資產種類別 再評價差額	32
〈表 III - 8〉 資產種類別 再評價差額의 比率	33
〈表 III - 9〉 資產別 帳簿價額 對比 再評價額 比率 (1965~1993)	35
〈表 III - 10〉 都賣物價와 再評價의 關係	36
〈表 III - 11〉 企業公開個數	38
〈表 III - 12〉 業種別 再評價의 實態：서울地方廳의 境遇	39
〈表 III - 13〉 資產再評價 企業의 母集團과 本 資料의 比較	40
〈表 III - 14〉 企業形態別 資產再評價 比率	41
〈表 III - 15〉 業種別 資產再評價 比率	41
〈表 III - 16〉 資產再評價 前年度의 自己資本 比率	42
〈表 III - 17〉 資產再評價를 통한 自己資本率의 變化	43
〈表 III - 18〉 資產再評價에 따른 賣出額 對比 當期純利益率의 變化	44

〈表 IV - 1〉 調査企業의 一般的 特性	47
〈表 IV - 2〉 資産再評價 實施 經驗 有無	48
〈表 IV - 3〉 資産再評價 實施 回數	49
〈表 IV - 4〉 資本 및 資産 總額의 變化와 再評價差額	50
〈表 IV - 5〉 資産再評價 差益 크기의 比較	51
〈表 IV - 6〉 資産再評價差額에서 土地資産이 차지하는 比率 ...	52
〈表 IV - 7〉 土地資産에 대한 再評價를 實施할 수 없을 境遇에 再評價 實施 意思	53
〈表 IV - 8〉 資産再評價 實施時 都賣物價指數 25%線에 對한 見解	55
〈表 IV - 9〉 現行 資産再評價 節次에 對한 見解	56
〈表 IV - 10〉 再評價時 關聯職員들의 再評價 準備와 實施을 위한 時間과 費用	57
〈表 IV - 11〉 現行 資産再評價時 依賴機關의 鑑定料 規模	58
〈表 IV - 12〉 資産再評價 機關들의 再評價에 對한 信賴度	59
〈表 IV - 13〉 現行 資産再評價 稅額에 對한 意見	60
〈表 IV - 14〉 都賣物價上昇率이 25% 以上일 때 即時 再評價 實施 有無	61
〈表 IV - 15〉 都賣物價上昇率이 25% 以上 上昇하였는데도 再評價를 實施하지 않은 理由	62
〈表 IV - 16〉 企業間 財務諸表의 相互比較에 對한 見解	63
〈表 IV - 17〉 資産再評價制度에 對한 建議事項	65
〈表 IV - 18〉 現行 資産再評價制度의 存續 必要性	66
〈表 V - 1〉 資産再評價制度의 便益과 費用	69
〈表 V - 2〉 殘存價値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率의 變化	78
〈表 V - 3〉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79
〈表 V - 4〉 法人稅制의 變化	82
〈表 V - 5〉 法人稅制 變化의 經濟的 效果	82

〈表 V-6〉 資產再評價制度的 經濟的 效果分析	84
〈表 V-7〉 資產再評價制度和 資本費用	86
〈表 V-8〉 資產再評價稅率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88
〈表 VI-1〉 資產別 再評價의 偏重(1993)	92
〈表 VI-2〉 物價指數와 地價指數의 變動 推移	92
〈表 VI-3〉 資產別 再評價差額과 資本規模	94
〈表 VI-4〉 運輸資產의 耐用年數의 變化	95
〈表 VI-5〉 年度別 都賣物價指數의 趨勢	96

圖 目 次

〔圖 III-1〕 資產再評價差額에 대한 移越缺損金の 比率	27
〔圖 III-2〕 帳簿價額 對比 再評價額의 規模	30
〔圖 III-3〕 資產別 再評價差額의 構成	34
〔圖 III-4〕 再評價企業數와 都賣物價上昇率의 關係	37
〔圖 V-1〕 資產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 測定	70
〔圖 V-2〕 減價償却制度와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變化	80
〔圖 V-3〕 減價償却制度와 資本費用의 變化	80
〔圖 V-4〕 都賣物價指數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舊制度	85
〔圖 V-5〕 都賣物價指數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新制度	85
〔圖 VI-1〕 物價指數와 地價指數의 變動推移	93
〔圖 VI-2〕 都賣物價指數의 趨勢	97

I. 序 論

資産再評價制度는 극심한 物價上昇下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1958년에 제정되었으며, 1965년에 영구법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자산재평가제도의 목적은 ‘減價却額의 現實化’와 ‘企業經營의 合理化’로 나눌 수 있다²⁾. 즉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현실화시켜 稅負擔을 緩和할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正確한 財務情報을 提供할 수 있으며, 재평가로 인한 差額을 자본전입함으로써 財務構造를 改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지금은 30여 년간 운용되어온 資産再評價制度가 이러한 제도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일반적으로 資産再評價制度는 企業의 財務構造를 改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기업간의 財務構造를 비교하기 어렵고 不動產 投資를 選好하게 하는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사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과 비용을 규명할 수 있는 資産再評價制度의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³⁾.

-
- 1) 중요한 改正案으로 1984년에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再評價資産에서 토지를 제외하였으며, 다만 개정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1회에 한해 再評價를 허용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企業公開를 유도하기 위해 都賣物價上昇率에 관계없이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 재평가를 허용하였으나, 1990년에 폐지하였다.
 - 2) 資産再評價法 제1조에 의하면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減價却을 가능하게 하고 企業資本의 正確을 기함으로써 經營의 合理化를 도모함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3)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는 “同 制度를 폐지하거나 한시적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會計學的인 觀點에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實證的 研究로 鄭濡基(1993), 許成寬과 丁新作(1990), 趙賢衍(1987)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郭泰元(1985)은 經濟的 및 政策的인 觀點에서 자산재평가제도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여러 가지 政策對案이 資本費用에 미치는 效果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시작된 資産再評價制度의 개정에 대한 관심은 上場會社協議會(1994), 全春玉(1995) 등의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會計 및 法律的인 接近方法을 사용하여 자산재평가제도를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存廢 및 改正에 대한 政策立案은 현 자산재평가제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政策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資産再評價制度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經濟的 效果와 財務構造에 미치는 效果 分析을 통하여 자산재평가제도를 평가하고, 이 제도가 가지는 問題點을 糾明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國稅統計年報資料와 國稅廳 內部資料 등 여러 가지 자료들과 방법론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現 資産再評價制度의 實態와 特性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한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기업의 반응을 파악하였고, 재평가를 시행한 표본기업의 재무구조 자료를 사용하여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政策代案들이 資本費用(cost of capital)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模擬實驗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資産再評價制度의 變遷過程을 알아보고,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고찰한다. 제Ⅲ장에서는 資産再評價制度를 運營하는 企業들의 實態와 特性을 살펴보고, 財務構造에 미치는 效果에 대한 實證分析結果를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企業의 實態調査結果를 보여주고, 제Ⅴ장에서는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의 經濟적 效果에 대해 살펴본다. 제Ⅵ장에서는 資産再評價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대해 논의하고, 제Ⅶ장에서는 本 研究의 結論을 짓는다.

II. 資産再評價制度의 變遷過程 및 文獻考察

本章에서는 資産再評價制度가 195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變遷過程을 간략히 살펴보고 資産再評價制度의 實證的인 效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찰한다.

1. 資産再評價制度의 變遷過程¹⁾

우리나라의 資産再評價制度는 해방 이후부터 6·25동란 후의 復舊期까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누적된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195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²⁾. 이 법은 195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한해 法人은 의무적으로 再評價를 실시하여야 하고, 개인기업은 任意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限

- 1) 資産再評價制度의 沿革은 郭泰元(1985)과 上場會社協議會(1994)를 참조하였다.
- 2) 資産再評價制度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시행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및 남미제국에서 채택하였고, 현재는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실시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시기
프랑스	1945, 1946, 1948, 1949, 1952, 1959, 1960
이탈리아	1946, 1948, 1951
대만	1947, 1955, 현재
서독	1949~50, 1955
일본	1950~51, 1953~54, 1957
브라질	1951, 1964
아르헨티나	1960

時法이었다. 資産再評價 對象은 資産再評價日 현재 國內에 보유하고 있는 土地 및 土地上的 權利를 포함한 자산이며, 再評價方法은 時價鑑定方法이 아닌 物價倍數를 適用하였다. 그리고 재평가차익에 대해서는 1%의 資産再評價稅 이외의 다른 세금은 면제하였다.

1958년의 제1차 재평가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지 않아 기업자산의 장부가액이 여전히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기업은 租稅負擔을 回避하기 위하여 資本構造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1962년에 資産再評價特別措置法을 制定·公布하였다. 이 법은 1962년 5월 24일부터 196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法人과 個人企業 모두 任意的으로 再評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평가 대상은 資産뿐만 아니라 負債까지 포함시켜 기업의 資本構造를 正常化하여 기업의 租稅回避를 遮斷하고자 하였다. 資産再評價 방법은 倍數評價와 時價評價를 병행하였으며, 資産再評價差額에 대해서 자산의 경우 0.5%, 부채의 경우 1%의 資産再評價稅를 부과하고 다른 세금은 면제하였다.

그 후 資産再評價制度는 1965년 3월 31일에 永久法으로 制定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資産再評價 절차는 법인과 개인기업의 구분없이 임의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구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발생할 빈번한 재평가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의 주기를 2년으로 제한하였다. 재평가 대상은 資産에 局限시켜 부채를 제외하였으며, 再評價 方法을 時價評價 方法으로 바꾸었다. 資産再評價 차익에 대해서는 3%의 資産再評價稅를 부과하였다.

영구법으로의 전환에 따른 빈번한 재평가의 폐단을 우려하여 再評價 週期를 2년으로 하였다가 1969년 7월에는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71년 12월에 다시 2년으로 환원하였다. 그 후 1974년 12월의 개정을 통해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都賣物價指數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再評

價積立金の 資本轉入으로 인한 배당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無償株取得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였다. 1976년 12월에는 不動產投機를 防止하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非業務用 不動產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無償株配當으로 인한 기업의 배당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再評價積立金の 자본전입에 따른 登錄稅 非課稅期間을 延長하였다.

기업이 資産再評價制度를 통하여 土地投資에서 얻은 利益을 법인

〈表 II - 1〉 資産再評價法の 沿革

	재평가법 1	재평가법 2	재평가법 3	재평가법 4
명칭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임시 조치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
공포일	1958. 1. 2	1962. 5. 24	1965. 3. 31	1974. 12. 21
효력기간	1958.1.1~12.31 (1년간)	62.5.24~64.4.30 (2년간)	영구법	영구법
재평가의 강제성	법인 : 의무 개인 :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재평가의 제한	-	-	재평가일 이후 2년경과	재평가일 이후 25% 이상 도매물가지수 상승시
재평가대상	자산	자산·부채	자산	자산
산정방법	배수평가	배수평가 및 시가평가	시가평가	시가평가
재평가세율	1%	자산 : 0.5% 부채 : 1%	3%	3%
재평가적립 금의 처분 제한	- 재평가세 납부 - 자본전입	좌동	좌동	- 재평가세 납부 - 자본전입 - 재평가일 이후에 발 생한 결손금 보전 -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

세 과세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시켜줌으로써 조세부담면에서 生産的인 事業經營보다는 토지투자가 더욱 이익이 크도록 만들었다.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토지투자를 선호케 하는 副作用을 誘發함으로써 1983년 12월에 土地·株式·立木 등 非減價償却資産을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이 습 시행 전에 취득한 비감가상각 자산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87년 11월에는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 도매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재평가를 허용하였다³⁾. 그러나 이 조항은 1990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表 II-2〉 資産再評價法の 改正 內容

개 정 일	주 요 내 용
1976. 12. 22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
1983. 12. 29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주식·입목 등 비감가상각 자산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
1987. 11. 28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신설
1990. 12. 31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삭제

資産再評價制度는 減價償却額을 現實化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가상각제도와 항상 연관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資産再評價制度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減價償却制度의 變遷過程을 아울러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는 1950년대에 일본의 제도를 원용하여 제정된 이후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1994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새로운 감가상각제도가 시행되어 커다란 변화를 가지게

3) 租稅減免規制法 제56조의 2〔企業公開時の 再評價特例〕 신설(1987. 11. 28).

되었다. 새로운 減價償却制度의 특징은 殘存價額의 廢止와 資産別稅法上 耐用年數의 大幅 短縮으로 대표할 수 있다. 기존의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經濟的 減價償却과 일치시키려는 정책방향인데 반해, 새로운 감가상각제도는 經濟的 減價償却과는 관계없이 企業의 自律性과 投資를 促進하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 그러므로 새로운 減價償却制度에서는 기업은 세법상 감가상각액을 실제 經濟的 減價償却額보다 훨씬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資産再評價 關聯研究의 文獻考察

자산재평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회계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며, 경제 및 정책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郭泰元(1985)은 資産再評價制度의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Jorgenson의 資本費用(cost of capital) 概念을 사용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형태와 재평가세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이론적 효과를 모의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資産再評價制度는 資本費用을 引下하는 效果가 크며, 그 크기는 物價上昇率이나 實質割引率 및 資産形態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減價償却制度가 개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새로운 減價償却制度下에서의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회계분야에서 이루어진 資産再評價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실증적 분석을 통한 연구를 토대로 살펴본다. 會計分野에서 관련

4) 減價償却政策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먼저 日本과 獨逸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經濟的 減價償却과 일치시키려는 방향과 美國과 英國처럼 경제적 감가상각과는 무관하게 경제정책의 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향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玄鎮權(1994a)을 참조하기 바란다.

연구의 대부분은 資産再評價의 動機와 資産再評價가 株價에 미치는 影響을 實證分析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실증연구로서 국내연구로는 鄭滯基(1993), 許成寬과 丁新作(1990), 潘先燮(1990), 趙賢衍(1987)을 들 수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Emanuel(1989), 영국의 경우는 Standish and Ung(1982)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개략적 내용은 <表 II-3>에 요약되어 있다.

鄭滯基(1993)는 1987년 1월 1일부터 1992년 1월 1일 사이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46개 上場企業과 같은 기간 동안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39개 上場企業의 財務的 特性을 이용하여 資産再評價 동기를 파악하였다. 또한 資産再評價 情報의 株價反應과 자산재평가 動機變數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자산재평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재무구조가 불량하고 사채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配當資源이나 現金負擔率은 자산재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週別 株價收益率과 자산재평가 동기변수를 사용하여 資産再評價 情報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산재평가 공시 12주 전부터 有意한 陽(+)의 주가가 관측되었으나 이러한 반응이 자산재평가 동기변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資産再評價가 減價償却費의 適正한 計上을 통한 租稅負擔의 輕減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상이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株式市場도 현금흐름의 개선효과보다는 財務構造改善效果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許成寬과 丁新作(1990)은 1983년과 1984년에 資産再評價를 실시한 52개 상장기업의 週別 株價收益率과 財務特性을 이용하여 資産再評價 公示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주가를 움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산재평가를 공시한 주와 공시 다음 주에 약 2% 정도의 超過株價收益率이 발생함으로써 재평가 공시가 정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

과수익률의 발생원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負債比率, 株當純利益, 配當性向에 대해서는 有意성이 없었고, 減價償却費의 增加에 의한 減稅效果만이 초과수익률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潘先燮(1990)은 1975년부터 1988년까지 資産再評價를 실시한 98개 上場企業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또한 결산일이 같고 동종 산업에 속하면서 有形固定資産/總資産 比率이 유사한 기업을 통제 집단으로 선정하여 자산재평가 동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資産再評價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資産再評價 실시 직전연도의 財務特性을 사용하여 資産再評價 동기를 파악한 결과 負債比率와 會社債比率이 높은 기업이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日別 株價收益率을 사용하여 資産再評價 공시 시점을 전후한 29일간의 株價變動을 관찰한 결과 공시시점 이후에 陽(+)의 비정상수익률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비정상수익률이 財務特性變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장기업이 資産再評價를 실시하는 이유는 法人稅 負擔을 減少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적된 移越缺損金을 補填하고, 無償 有償增資를 통한 資本金의 增加와 借入金 調達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趙賢衍(1987)은 資産再評價 공시가 株價收益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1974~1985년 사이에 資産再評價를 실시하고, 그 차액이 15억원 이상인 53개 기업과 이와 동일한 산업에 속하며 유사한 체계상 위험을 가진 53개 資産再評價 未實施 기업의 財務資料와 月別 株價收益率이다. 우선 재평가 실시 전후 4년간의 현금흐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資産再評價 실시 후에 기업 내의 현금흐름이 증가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재평가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全期間(1975~1985년)에 대한 株價收益率은 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를 前期間(1974~1979년)과 後期間(1980~1985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前期間에 實驗集團의 주가수익률이 統

制集團의 주가수익률보다 높아 資産再評價 公示가 情報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간에는 두 집단간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株價의 殘差收益率과 財務特性과의 分析에서 실험집단의 당기순이익과 배당이 감소한 기업들의 잔차수익이 높았으며, 또한 자본금 변화가 있는 기업의 잔차수익이 높았다. 그러므로 기업이 移越缺損金을 補填하고, 配當이 減少된 결과를 상쇄시키고자 意圖的으로 資産再評價를 實施하며, 또한 現金配當을 하기 어려운 경우 無價株를 交付할 수 있는 財源을 마련하고자 資産再評價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Emanuel(1989)은 뉴질랜드에서 資産再評價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70~1979년 동안에 資産再評價를 실시하고 그 차액이 총자산의 5% 이상 증가한 143개 상장기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기업구조의 체계적 위험이 유사한 143개 資産再評價 미 실시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週別 株價收益率을 이용하여 殘差分析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資産再評價의 公示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資産再評價 공시일을 기업의 연차보고서 공표일로 하였기 때문에 공시일 주변에 나타나는 非正常收益率은 資産再評價 공시와 年次報告書에 수록된 여러 정보와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Standish and Ung(1982)는 영국에서 資産再評價 公示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어떤 변수와 관련이 있는지를 資産再評價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검증하였다. 실험집단으로 1964~1973년 동안 資産再評價를 실시하고, 帳簿價格이 10% 이상 증가한 232건을 선정하고, 統制集團으로는 같은 기간 내에 實驗集團과 유사한 體系的 危險을 가진 資産再評價 미 실시 기업을 232건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資産再評價 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상주가수익률은 資産再評價 공시만으로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었다.

〈表 II-3〉 資産再評價 關聯 先行研究 要約

鄭濬基(1993)	
1. 목적	○ 자산재평가 동기
2. 자료	○ 자산재평가 정보 영향 - 주가반응과 자산재평가 동기와의 관계 ○ 1987년 1월 1일 ~ 1992년 1월 1일 사이에 실험집단 : 자산재평가 실시 46개 기업 통제집단 : 자산재평가 미실시 39개 기업
3. 방법	○ 재평가 동기관련 회귀분석(Probit 추정) ○ 자산재평가 정보관련 주별 주가수익률과 동기변수와 회귀분석
4. 결과	○ 자산재평가 동기관련 결과 종속변수 : 자산재평가 유무 설명변수 : 재무구조(-), 부채비율(+), 배당가능자원(?), 현금부담률(?) ○ 자산재평가 정보영향 : $t_{-12} \sim t_0$ 까지 陽(+)의 누적초과수익률(CAR) 발생 종속변수 : CAR(-1, 0)와 CAR(-12, 0) 설명변수 : 재무구조(?), 사채(?), 배당(?)
許成寬·丁新作(1990)	
1. 목적	○ 자산재평가 공시 영향과 주가변동 요인
2. 자료	○ 1983~1984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52개 상장기업의 주별 주가수익률 및 재무지표
3. 방법	○ 회귀분석
4. 결과	○ 공시한 주와 +1주에서 초과수익률이 발생 종속변수 : 초과주가수익률 설명변수 : 부채비율의 개선(?), 감가상각비 증가(+), 주당순이익의 감소(?), 배당성향변동(?)
潘先燮(1990)	
1. 목적	○ 자산재평가 동기와 자산재평가 공시 영향
2. 자료	○ 실험집단 : 1975~1988년 사이 자산재평가 실시 98개 기업 ○ 통제집단 : 결산일이 같고 동종산업에 속하면서 (유형고정자산/총자산)의 비율이 유사한 기업
3. 방법	○ 관별분석과 회귀분석
4. 결과	○ 자산재평가 동기 : 자산재평가 직전연도의 재무 특성으로 관별분석 설명변수 : 법인세부담률(?), 부채비율(+), 회사채비중(+), 배당가능재고(?), 이자보상비율(?), 자산총액(?), 주당순이익(?), 배당률(?) ○ 자산재평가 공시영향 : 일별 주가수익률로 비정상주가수익률을 구한 결과 공시시점 이후 陽(+)의 비정상수익률 발생 종속변수 : 누적초과수익률 설명변수 : 법인세절감액(?), 배당가능재고(?), 일반부채(?), 회사채(?), 무상주요부액(?), 자산규모(?)

〈表 II-3〉의 계속

趙賢衍(1987)	
1. 목적	○ 자산재평가 공시 영향
2. 자료	○ 실험집단 : 1974~1985년 사이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53개 기업 통제집단 : 자산재평가 미 실시 53개 기업
3. 방법	○ 정준상관분석 및 잔차분석(월별 주가수익률)
4. 결과	○ 자산재평가와 현금흐름간의 상관관계 없음 ○ 자산재평가 공시와 잔차분석 전체기간 : 두집단간에 유사 전기간(1974~79년) : 실험집단 $t-1 >$ 통제집단 $t-1$, 후기간(1980~85년) : 유사 ○ 비정상수익률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실험집단 : 당기순이익 감소(+), 배당률 감소(+), 자본금 변동(+) 통제집단 : 당기순이익 증가(+), 배당률 증가(+),
Emanuel(1989)	
1. 목적	○ 자산재평가가 공시 영향
2. 자료	○ 실험집단 : 1970~79년 뉴질랜드 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 실시 143건 통제집단 : 같은 기간 내에 유사한 체계적 위험을 가진 미 실시 143건
3. 방법	○ 잔차분석(주별 주가수익률)
4. 결과	○ 순수한 자산재평가 공시만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자산재평가 공시일을 연차보고서 공표일로 하였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기순이익 및 배당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Standish & Ung(1982)	
1. 목적	○ 자산재평가 공시 영향
2. 자료	○ 실험집단 : 1964~73년 영국 상장기업의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232건 통제집단 : 같은 기간 내에 유사한 체계적 위험을 가진 미 실시 232건
3. 방법	○ 잔차분석(월별 주가수익률)
4. 결과	○ 실험집단 : t_{-12} , t_0 , t_{12} 기에 비정상수익률 통제집단 : 주가변동 없음 ○ 비정상수익률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실험집단 : 당기순이익(?), 배당정보(?), 자본금변동(+) 통제집단 : 당기순이익 증가(+), 배당 증가(+)

Ⅲ. 資産再評價의 現況과 特性

本章에서는 자산재평가제도의 현황과 그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자산재평가의 규모를 法人數, 資産再評價差額, 資産再評價稅額 등을 통하여 연도별로 살펴본다. 아울러 자산종류별로 자산재평가의 규모와 자산재평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산재평가제도의 財務構造 改善效果를 살펴본다.

1. 資産再評價의 規模

1965년에 永久法으로 자산재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의 실태를 살펴본다. <表 Ⅲ-1>은 1965년부터 1993년까지의 자산재평가를 한 法人數, 資産再評價差額, 資産再評價稅額의 趨勢를 보여준다. 1993년 한 해에 재평가를 한 법인은 144개이고, 재평가 차액은 약 6조 8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평가세액은 1,52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재평가를 한 기업의 수와 재평가로 인한 稅收規模를 全體 法人數 및 國稅規模와 비교하여 그 비중을 살펴본다. 또한 法人當 再評價差額의 規模와 再評價稅 規模를 <表 Ⅲ-2>에서 보여준다. 전체 법인수 대비 자산재평가 법인수는 연도에 따라 심한 변화를 나타낸다¹⁾. 1974년에 가장 높은 비율인 5.4%를, 최근에는 0.1%의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再評價稅額이 전체 국세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 이내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再評價稅額 규모는 國家

1) 여기서 법인수는 『國稅統計年報』에 나타나는 수치이다.

財政 차원에서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²⁾. 法人當 再評價差額과 再評價稅額은 연도별로 변화가 심한데 1993년을 기준으로 法人當 再評價差額은 422억원이며, 再評價稅額은 10억 6천만원 수준이다.

〈表 Ⅲ-1〉 資産再評價의 現況

(單位: 개사, 백만원)

	재평가 기업수	재평가 차액	산출세액
1965	4	358	11
1966	189	9,138	256
1967	153	17,551	552
1968	192	37,809	1,036
1969	115	28,934	840
1970	135	23,683	623
1971	125	14,897	387
1972	126	43,001	1,256
1973	146	118,336	3,278
1974	240	123,111	3,390
1975	126	181,179	5,319
1976	247	329,899	8,332
1977	186	379,481	8,451
1978	161	141,975	3,871
1979	278	592,942	14,506
1980	432	1,202,513	34,664
1981	561	2,152,478	51,076
1982	479	4,132,015	66,861
1983	302	1,626,065	36,020
1984	430	1,222,713	32,799
1985	176	241,157	6,620
1986	125	224,289	5,448
1987	127	750,480	21,528
1988	187	1,385,773	40,190
1989	204	4,967,355	143,230
1990	150	1,165,643	33,935
1991	130	4,096,058	103,131
1992	94	2,669,288	45,621
1993	144	6,082,466	152,017

2) 국세와 대비한 비율을 구할 때 사용한 資産再評價稅額은 징수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반면 法人當 再評價稅額은 징수연도가 아닌 該年度에 산정한 再評價稅額을 기준으로 하였다.

〈表 Ⅲ-2〉 法人當 再評價의 平均値

(單位：개사, %, 백만원)

	재평가기업수 비율	국세대비 재평가세액	법인당 재평가차액	법인당 재평가세액
1965	0.1	0.2	89.4	2.7
1966	3.0	0.4	48.4	1.4
1967	2.4	0.6	114.7	3.6
1968	2.8	0.4	196.9	5.4
1969	1.4	0.3	251.6	7.3
1970	1.5	0.2	175.4	4.6
1971	1.3	0.3	119.2	3.1
1972	1.3	0.3	341.3	10.0
1973	1.4	0.2	810.5	22.5
1974	5.8	0.3	513.0	14.1
1975	1.0	0.4	1,437.9	42.2
1976	1.8	0.4	1,335.6	33.7
1977	1.2	0.3	2,040.2	45.4
1978	1.0	0.2	881.8	24.0
1979	1.4	0.2	2,132.9	52.2
1980	2.0	0.4	2,783.6	80.2
1981	2.4	0.6	3,836.9	802.7
1982	1.9	0.7	8,626.3	139.6
1983	0.9	0.5	5,384.3	119.3
1984	1.2	0.3	2,843.5	76.3
1985	0.4	0.1	1,370.2	37.6
1986	0.3	0.0	1,794.3	43.6
1987	0.3	0.1	5,909.3	169.5
1988	0.3	0.2	7,410.6	214.9
1989	0.3	0.4	24,349.8	702.1
1990	0.2	0.4	7,771.0	226.2
1991	0.1	0.2	31,508.1	793.3
1992	0.1	0.2	28,396.7	485.3
1993	0.1	0.3	42,239.3	1,055.7

註：재평가 인원비율 = 재평가인원/법인총수 × 100

국세대비 재평가세액 = 징수기준 재평가세액/국세 × 100

법인당 재평가차액 = 재평가차액 /재평가인원

법인당 재평가세액 = 산출재평가세액/재평가인원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되는 자산재평가차액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上場會社의 資本金 規模와 比較하여 본다. <表 III-3>은 최근 3년 동안의 재평가차액의 총 규모를 상장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비교한 결과이다. 1993년을 기준으로 재평가차액은 상장회사 자본 총계의 약 10.9%를 차지하는 커다란 규모임을 알 수 있다³⁾.

<表 III-3> 資本 總計 對比 再評價差額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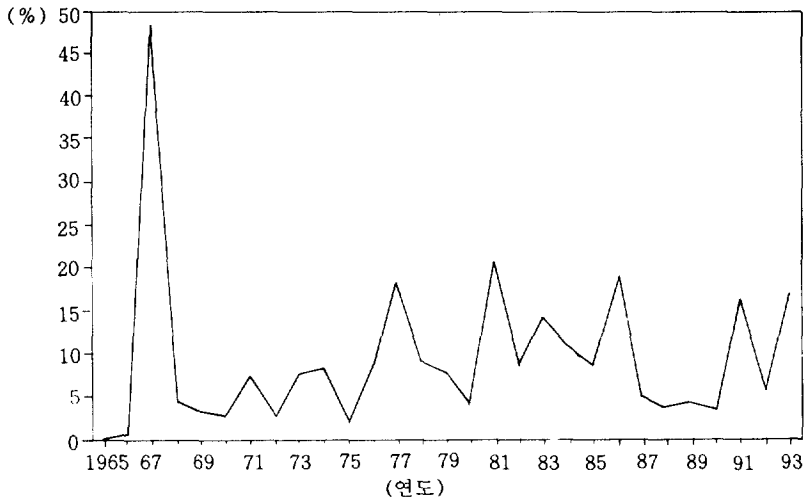
(單位：10억원, 배)

	자본총계(A)	재평가차액(B)	B / A
1991	42,654	4,096	0.096
1992	49,371	2,669	0.054
1993	55,596	6,082	0.109

註：자본 총계는 상장회사만의 합계임.

資産再評價差額의 活用面을 살펴보기 위해 재평가차액 중에서 移

[圖 III-1] 資産再評價差額에 대한 移越缺損金の 比率



3) 자본총액은 장부가액인 반면 재평가차액은 시가이므로 이 비율에 대해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越缺損金を 差減하는 比率을 <表 Ⅲ-4>와 [圖 Ⅲ-1]이 보여준다. 再評價差額에서 이월결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에 따라 매우 변화의 폭이 심한데 1993년 현재 약 17%로 資産再評價差額에

<表 Ⅲ-4> 再評價差額에서 移越缺損金の 比率

(單位: 백만원, %)

	재평가차액(A)	이월결손금(B)	비율(B/A)
1965	358	2	0.6
1966	9,138	59	0.6
1967	17,551	8,526	48.6
1968	37,809	1,602	4.2
1969	28,934	938	3.2
1970	23,683	634	2.7
1971	14,897	1,089	7.3
1972	43,001	1,123	2.6
1973	118,336	9,053	7.7
1974	123,111	10,121	8.2
1975	181,179	3,847	2.1
1976	329,899	28,948	8.8
1977	379,481	67,696	17.8
1978	141,975	12,485	8.8
1979	592,942	46,434	7.8
1980	1,202,513	46,921	3.9
1981	2,152,478	450,330	20.9
1982	4,132,015	341,060	8.3
1983	1,626,065	227,337	14.0
1984	1,222,713	129,396	10.6
1985	241,157	20,480	8.5
1986	224,289	42,693	19.0
1987	750,480	32,862	4.4
1988	1,385,773	46,105	3.3
1989	4,967,355	193,035	3.9
1990	1,165,643	34,473	3.0
1991	4,096,058	658,334	16.1
1992	2,669,288	142,557	5.3
1993	6,082,466	1,011,912	16.6

서 移越缺損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資産再評價를 한 후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再評價額과 실제 帳簿價額과의 關係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보자. <表 III-5>와 [圖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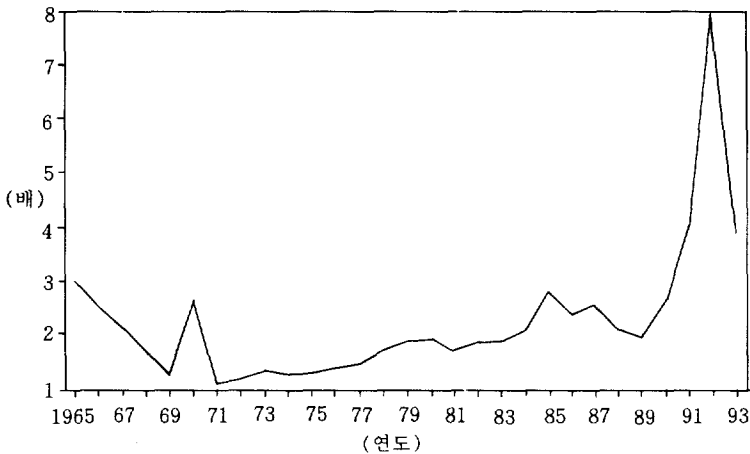
<表 III-5> 再評價額과 帳簿價額의 差異

(單位：백만원, 倍)

	재평가액(A)	장부가액(B)	A/B
1965	538	180	2.98
1966	15,101	5,962	2.53
1967	33,045	15,494	2.13
1968	92,818	55,009	1.69
1969	145,531	116,597	1.25
1970	38,239	14,557	2.63
1971	195,582	180,685	1.08
1972	280,061	237,060	1.18
1973	491,348	373,012	1.32
1974	613,212	490,101	1.25
1975	828,395	647,215	1.28
1976	1,272,580	942,681	1.35
1977	1,299,034	919,553	1.41
1978	353,457	211,482	1.67
1979	1,278,137	685,196	1.87
1980	2,531,063	1,328,549	1.91
1981	5,319,661	3,167,184	1.68
1982	9,096,697	4,964,683	1.83
1983	3,488,696	1,862,631	1.87
1984	2,432,008	1,209,295	2.01
1985	377,513	136,356	2.77
1986	389,755	165,466	2.36
1987	1,244,996	494,516	2.52
1988	2,713,120	1,327,347	2.04
1989	10,512,647	5,545,292	1.90
1990	1,884,225	718,582	2.62
1991	5,446,630	1,350,572	4.03
1992	3,058,887	389,599	7.85
1993	8,186,361	2,103,895	3.89

-2)는 年度別 資産再評價額 對比 帳簿價額의 比率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은 연도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만 비교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평가액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92년에는 7.85배를 나타내는 등 1990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은 추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資産再評價로 인해 企業이 얻게

[圖 Ⅲ-2] 帳簿價額 對比 再評價額의 規模



<表 Ⅲ-6> 上場法人 財源別 無償增資 現況

(單位: 백만원, %)

	금 액	재평가적립금		기 타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1984	127,798	93,644	73.3	34,154	26.7
1985	43,547	36,469	83.7	7,078	16.3
1986	81,366	65,094	81.0	15,462	19.0
1987	119,943	74,371	62.0	45,572	38.0
1988	256,758	64,579	25.2	192,179	74.8
1989	1,422,948	147,331	10.2	1,295,617	89.8
1990	737,718	74,859	10.1	662,859	89.9
1991	147,130	20,172	13.7	126,958	86.3
1992	102,347	42,615	41.6	59,732	58.4

되는 혜택은 매우 높아져 企業의 關心이 집중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업이 자산재평가 후 再評價積立金の 活用實態를 살펴본다. <表 III-6>은 無償增資를 施行한 上場法人을 대상으로 再評價積立金を 재원으로 한 비율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1984~1987년 동안은 再評價積立金이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된 비중이 62~84%였고 그 후 이 비중은 매우 감소하다가 1992년에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2. 資産種類別 資産再評價의 現況

전체 자산재평가차액 중에서 資産種類別 實態를 살펴보면 <表 III-7>과 같다. 연도에 따라 재평가차액의 수준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경우 減價償却對象 資産을 통한 再評價差額은 1조 1천억원임에 반해 土地를 통한 재평가차액은 4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자산별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表 III-8>과 같다. 아울러 [圖 III-3]은 연도에 따른 자산재평가차액의 실태를 간단히 보여준다. 자산별 재평가차액을 살펴보면 有無形의 減價償却資産과 土地가 대부분을, 株式과 立木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資産再評價를 하는 자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유무형의 減價償却資産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토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83년에 資産再評價法 改正을 통하여 土地를 再評價對象에서 除外하였으며, 改正 以前에 취득한 土地資産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재평가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이후로는 資産再評價差額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추세를 보인다.

〈表 Ⅲ-7〉 資産種類別 再評價差額

(單位：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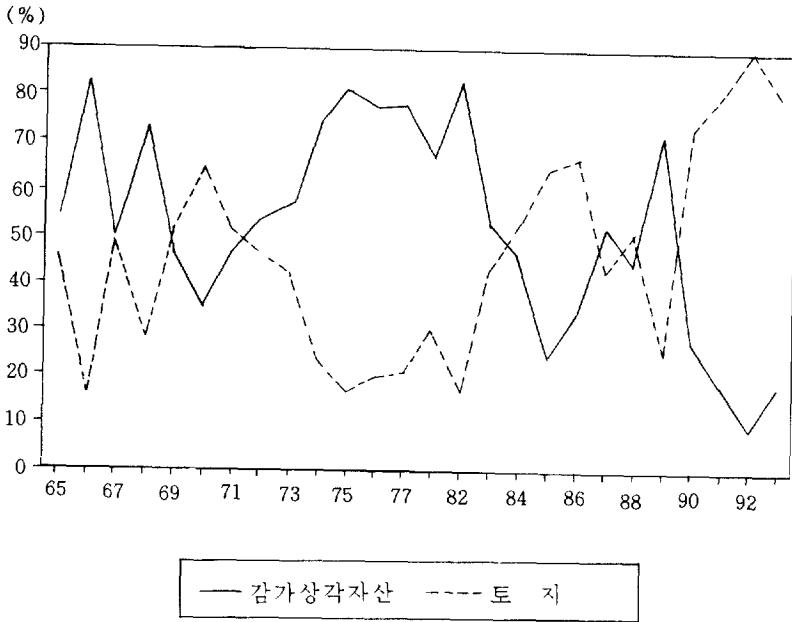
	감 가 상 각 자 산			토 지	주 식	입 목	계
	유 형 감가상각	무 형 감가상각					
1965	195	187	8	163	-	-	358
1966	7,606	7,247	358	1,466	1	66	9,138
1967	8,424	7,641	783	8,777	348	2	17,551
1968	27,348	26,808	540	10,432	27	2	37,809
1969	13,185	12,984	200	15,151	599	-	28,935
1970	8,375	7,742	633	15,269	29	-	23,673
1971	6,947	6,349	598	7,683	137	130	14,897
1972	22,968	22,912	56	19,955	19	60	43,001
1973	67,105	65,245	1,859	50,084	1,092	55	118,336
1974	91,786	91,249	537	28,844	2,407		123,037
1975	146,624	145,256	1,368	30,311	4,191	53	181,179
1976	255,635	255,139	495	64,015	9,753	496	329,899
1977	294,403	270,206	24,197	78,577	6,128	283	379,391
1981	1,449,016	1,447,278	1,738	648,069	54,214	1,179	2,152,478
1982	3,412,484	3,411,296	1,188	688,747	28,703	2,081	4,132,015
1983	859,495	768,044	91,451	699,947	66,139	484	1,626,065
1984	569,262	569,091	171	643,818	7,909	1,724	1,222,713
1985	58,638	58,637	0	155,641	26,871	7	241,157
1986	74,231	74,230	1	149,884	96	78	224,289
1987	391,764	391,763	1	321,399	20,382	16,935	750,480
1988	615,138	615,138	-	701,584	68,305	746	1,385,773
1989	3,558,355	3,558,355	-	1,224,000	182,730	2,271	4,967,356
1990	317,163	317,163	-	846,987	1,388	105	1,165,643
1991	749,926	749,926	-	3,298,951	43,035	4,146	4,096,058
1992	236,407	236,407	-	2,381,262	49,779	1,840	2,669,288
1993	1,096,114	1,096,114	-	4,892,471	88,617	5,264	6,082,466

〈表 Ⅲ-8〉 資産種類別 再評價差額의 比率

(單位：%)

	감 가 상 각 자 산			토 지	주 식	입 목	합 계
	유형감가상각	무형감가상각					
1965	54.4	52.2	2.3	45.6	0.0	0.0	100.0
1966	83.2	79.3	3.9	16.0	0.0	0.7	100.0
1967	48.0	43.5	4.5	50.0	2.0	0.0	100.0
1968	72.3	70.9	1.4	27.6	0.1	0.0	100.0
1969	45.6	44.9	0.7	52.4	2.1	0.0	100.0
1970	35.4	32.7	2.7	64.5	0.1	0.0	100.0
1971	46.6	42.6	4.0	51.6	0.9	0.9	100.0
1972	53.4	53.3	0.1	46.4	0.0	0.1	100.0
1973	56.7	55.1	1.6	42.3	0.9	0.0	100.0
1974	74.6	74.2	0.4	23.4	2.0	0.0	100.0
1975	80.9	80.2	0.8	16.7	2.3	0.0	100.0
1976	77.5	77.3	0.2	19.4	3.0	0.2	100.0
1977	77.6	71.2	6.4	20.7	1.6	0.1	100.0
1981	67.3	67.2	0.1	30.1	2.5	0.1	100.0
1982	82.6	82.6	0.0	16.7	0.7	0.1	100.0
1983	52.9	47.2	5.6	43.0	4.1	0.0	100.0
1984	46.6	46.5	0.0	52.7	0.6	0.1	100.0
1985	24.3	24.3	0.0	64.5	11.1	0.0	100.0
1986	33.1	33.1	0.0	66.8	0.0	0.0	100.0
1987	52.2	52.2	0.0	42.8	2.7	2.3	100.0
1988	44.4	44.4	0.0	50.6	4.9	0.1	100.0
1989	71.6	71.6	0.0	24.6	3.7	0.0	100.0
1990	27.2	27.2	0.0	72.7	0.1	0.0	100.0
1991	18.3	18.3	0.0	80.5	1.1	0.1	100.0
1992	8.9	8.9	0.0	89.2	1.9	0.1	100.0
1993	18.0	18.0	0.0	80.4	1.5	0.1	100.0

〔圖 Ⅲ-3〕 資産別 再評價差額の構成



再評價額과 帳簿價額과의 差異를 資産별로 구분하여 재평가를 시행하려는 동기가 資産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表 Ⅲ-9>는 有無形의 減價償却資産과 土地에 대해 帳簿價額 對比 再評價額の 比率을 비교한 결과이다. 減價償却資産의 경우는 대부분 再評價額이 장부가액의 2배 이하이지만 토지의 경우는 변화가 매우 심하며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⁴⁾. 그러므로 企業이 再評價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再評價差額の 대부분은 土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참고로 日本의 경우는 土地에 대한 再評價額の 帳簿價額에 대한 比率이 1990년에는 4.56배, 1991년에는 3.72배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식과 토지에 대한 자세한 실태는 <附錄 I>을 참조하기 바란다.

〈表 Ⅲ-9〉 資產別 帳簿價額 對比 再評價額 比率(1965~1993)

(單位：%)

	감가상각 자산	토 지
1965	1.00	1.00
1966	2.52	2.63
1967	1.80	3.17
1968	1.53	4.09
1969	1.12	2.52
1970	1.72	6.53
1971	1.04	2.20
1972	1.10	4.64
1973	1.20	2.40
1974	1.20	1.74
1975	1.26	1.41
1976	1.30	1.91
1977	1.36	1.85
1981	1.57	2.39
1982	1.78	2.36
1983	1.59	3.01
1984	1.58	4.13
1985	1.62	5.55
1986	1.52	7.66
1987	1.98	5.01
1988	1.57	4.04
1989	1.67	7.12
1990	1.52	9.10
1991	1.71	13.68
1992	2.17	14.89
1993	1.68	16.66

3. 資産再評價制度 運用實態의 特徵

1974년부터 현재의 資産再評價制度가 시행되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都賣物價指數가 25% 이상일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자산재평가 시행여부는 都賣物價指數 上昇率의 程度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表 Ⅲ-10>에서는 1975년부터 1993년까지 都賣物價의 上昇率과 全體 法人數 對比 資産再評價 시행 법인의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圖 Ⅲ-4]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나타내었다. 이들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表 Ⅲ-10> 都賣物價와 再評價의 關係

(單位: %)

	도매물가 상승률	재평가 기업수 비율
1975	26.3	1.0
1976	4.3	1.8
1977	9.1	1.2
1978	11.7	1.0
1979	18.6	1.4
1980	38.9	2.0
1981	20.4	2.4
1982	4.7	1.9
1983	0.1	0.9
1984	0.8	1.2
1985	0.9	0.4
1986	-1.4	0.3
1987	0.4	0.3
1988	2.7	0.3
1989	1.5	0.3
1990	4.2	0.2
1991	4.7	0.1
1992	2.2	0.1
1993	1.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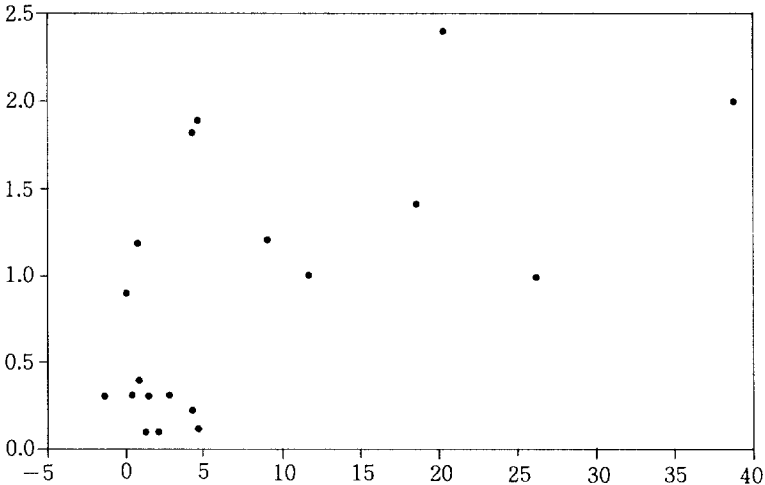
$$\text{자산재평가 법인의 비율} = 0.5531 + 0.0422(\text{도매물가상승률}),$$

$$(0.013)$$

$$R^2 = 0.38$$

여기서 괄호 안의 수치는 推定値의 標準誤差를 의미한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매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는 법인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圖 Ⅲ-4〕 再評價企業數와 都賣物價上昇率의 關係



1987년에 租稅減免規制法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하는 법인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非上場法人은 企業公開를 통하여 資産再評價를 하였으나 이 法은 1991년부터 폐지되었다⁵⁾.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장법인 전체 수와 기업공개한 법인 수를 비교한 결과가 <表 Ⅲ-11>에 나타나 있다. 資産再評價가 企業公開의 수단으로 사용된 1987년에 전체 상장기업 대비 公開企業의 비율이 11.3%로 상승하였고, 1988년에는 22.3%, 1989년에는 20.1%로 나타나 3개년 동안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1987년 11월 28일 租稅減免規制法 제56조 2의 자산공개시의 재평가특례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이를 1990년 12월 31일 폐지하였다.

〈表 III-11〉 企業公開個數

(單位：個社，%)

	공개기업수(A)	상장법인 총수(B)	비율(A/B×100)
1983	3	328	0.9
1984	14	336	4.1
1985	11	342	3.2
1986	16	355	4.5
1987	44	389	11.3
1988	112	502	22.3
1989	126	626	20.1
1990	36	669	5.3
1991	21	686	3.0
1992	8	688	1.1
1993	7	693	1.0
1994	25	699	3.5

資料：증권거래소 내부자료.

〈表 III-12〉에서는 서울地方國稅廳에서 1992년, 1993년, 1994년의 3년 동안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기업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준다⁶⁾. 製造業이 재평가하는 비율이 전체 법인의 64~70%로 비교적 제조업 중에서 再評價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業種別로 나누어 자산재평가를 한 기업수를 보여주는 자료는 『國稅統計年報』에 없다.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기업에 대한 개개의 정보는 지방청 단위로 소장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업종별로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전국단위의 기업 수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7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므로, 업종별 분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참고로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전체 기업수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에 50%, 1993년에 35.4%이다.

〈表 Ⅲ-12〉 業種別 再評價의 實態：서울地方國稅廳의 境遇

(單位：個社，%)

	1992		1993		1994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제조업	33	70.2	33	64.7	18	64.3
비제조업	14	29.8	18	35.3	10	35.7
합계	47	100	51	100	28	100

資料：국세청 내부자료.

4. 資産再評價制度의 財務構造 改善效果

자산재평가는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制度이므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⁷⁾. 資産再評價制度의 財務構造 改善效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산재평가 시점을 전후로 企業의 재무구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즉 자산재평가 시점을 중심으로 個別企業의 面板資料(panel data)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韓國信用情報株式會社에서 구축한 企業別 財務資料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個別企業의 연도별 財務構造를 보여주며, 資産再評價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체 企業자료 중에서 1988년에서 현재까지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企業을 모두 추출하였으며,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시점과 전후 1년 동안의 財務諸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企業자료 중에서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企業은 모두 추출하였지만 企業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企業이 있으므로 전체 모집단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다. 資産再評價를 施行한 母集團 企業과 本 資料의 企業數를

7) 앞 章에서 살펴보았듯이 資産再評價에 대한 實證研究은 대부분 이 제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므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살펴보면 <表 III-13>과 같다. 1988~1993년 동안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기업수는 전체 모집단의 58~83%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7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다⁸⁾. 또한 연도별로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기업의 분포에 있어서 모집단과 본 자료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기업의 개별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 본 개별자료는 母集團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다는 假定下에서 분석을 시도한다⁹⁾.

<表 III-13> 資産再評價 企業의 母集團과 本 資料의 比較

(單位：個社，%)

	모집단(A)	본자료(B)	B/A
1988	187(20.6)	129(19.9)	70.0
1989	204(22.4)	165(25.5)	80.9
1990	150(16.5)	90(13.9)	60.0
1991	130(14.3)	75(11.6)	57.7
1992	94(10.3)	78(12.1)	83.0
1993	144(15.9)	110(17.0)	76.4
합 계	909(100.0)	647(100.0)	71.2

註：() 안은 비중임.

가. 資産再評價 企業의 特性

앞 章에서 보여준 자산재평가의 실태는 주로 자산재평가에 관한 集計資料를 中心으로 分析하였으며 기업의 특성별로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¹⁰⁾. 여기에서는 본 자료에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기업의 특

8) 본 자료는 1994년에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9개의 기업을 포함하나, 1994년의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비교를 하지 않았다.

9) 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기업이 無作爲인 경우에는 母集團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0) 『國稅統計年報』에서 기업 특성별로 발표되는 자료는 법인종류(영리 및 비영리법인의 구분)와 관할 지방청에 대한 자료뿐이다.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개별기업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별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을 살펴본다. <表 Ⅲ-14>는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기업을 종류별로 나눈 결과이다. 上場法人이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높고 登録法人, 外監法人 순으로 나타났다.

<表 Ⅲ-14> 企業形態別 資産再評價 比率

(單位：個社，%)

	기 업 수	비 율
상 장 법 인	302	46.0
등 록 법 인	218	33.2
외 감 법 인	123	18.8
기 타	13	2.0
계	656	100.0

<表 Ⅲ-15>는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製造業이 약 8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타업종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都小賣業이 6.3%, 運輸·倉庫 및 通信業이 4.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表 Ⅲ-15> 業種別 資産再評價 比率

(單位：個社，%)

	기 업 수	비 율
농업·어업·광업	9	1.4
제조업	531	80.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	0.2
건설업	27	4.1
도소매업	41	6.3
숙박 및 음식점업	8	1.2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	4.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6	0.9
기타	3	0.5
계	656	100.0

11) 서울지방국세청 소재 기업 중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기업은 전체의 64~70% 수준을 보인다. 그러므로 재평가를 시행한 기업 중 지방에 위치한 기업은 제조업 위주임을 알 수 있다.

〈表 III-16〉은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기업에 대해 再評價施行 前年度の 自己資本 比率의 分布를 보여준다. 自己資本比率이 10% 이하인 기업이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15% 이하인 기업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表 III-16〉 資産再評價 前年度の 自己資本 比率

(單位：個社, %)

	법 인 수	비 율
5% 이하	129	19.7
6~10%	211	32.3
11~15%	153	23.3
16~20%	80	12.2
21~30%	60	9.1
31~40%	11	1.7
41~50%	9	1.4
50% 이상	3	0.5

나. 資産再評價制度和 財務構造

자산재평가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자산재평가제도가 企業의 財務構造를 改善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산재평가제도를 이용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자산재평가제도가 企業이 負擔하는 減價償却額을 現實化하는 目的도 있으므로 재평가를 통해 當期純利益이 減少되었는가를 살펴본다.

〈表 III-17〉은 자산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企業의 自己資本率에 미치는 影響을 보여준다.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통하여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기 직전 해의 자기자본의 평균비율은 11.86%이다. 그러나 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자기자본의 평균비율은 16.51%

로 증가하여 약 4.65% 가량의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有意한 수준으로 資産再評價制度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 再評價를 시행한 다음 해의 자기자본율은 17.39%로 약 1% 증가하였으며 統計的으로 有意한 수준이나 그 증가폭은 대폭 감소함을 알 수 있다.

〈表 Ⅲ-17〉 資産再評價를 통한 自己資本率의 變化

	평 균	표준편차	평균테스트	
			t값	유의수준
자산재평가 직전	11.86	8.37		
자산재평가 시행	16.51	12.80	11.58	0.00
자산재평가 직후	17.39	12.63	0.60	0.04

註：평균테스트는 재평가 직전과 시행연도, 시행연도와 직후연도에 대해 평균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한 것임.

資産再評價制度가 減價償却額의 現實化를 통해 當期純利益을 變化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賣出額 對比 當期純利益 比率을 사용한다. 〈表 Ⅲ-18〉은 재평가를 시행한 해와 시행 전후 해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재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3.59%이었으나 재평가를 함으로써 이 비율이 3.39%로 0.2%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감소폭은 統計的 有意水準이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減價償却 對象資産은 土地를 제외한 固定資産이나, 기업이 재평가하는 주된 대상이 토지이므로 자산재평가제도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액의 현실화란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재평가를 시행한 다음 해의 이 비율은 3.34%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여 資産再評價制度가 當期純利益率을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表 III - 18〉 資産再評價에 따른 賣出額 對比 當期純利益率의 變化

	평 균	표준편차	평균테스트	
			t값	유의수준
자산재평가 직전	3.59	3.20		
자산재평가 시행	3.39	3.01	1.78	0.08
자산재평가 직후	3.34	3.48	0.42	0.67

註：평균테스트는 재평가 직전과 시행연도, 시행연도와 직후연도에 대해 평균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한 것임.

자산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산재평가제도의 목적은 減價償却額의 現實化를 통한 財務構造의 改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실증연구에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資産再評價制度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반면, 減價償却額의 현실화 측면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IV. 資産再評價制度에 對한 企業調査 結果

資産再評價制度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本章에서는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企業들의 反應과 再評價 實態를 調査한 結果를 살펴본다. 본 조사는 大韓商工會議所에서 1995년 8월에 실시하였으며, 총 대상 978개 업체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44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企業이 再評價한 實態와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업종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크게 製造業과 非製造業으로 나누었고, 비제조업은 다시 金融業, 運輸·保管業, 建設業, 都小賣業, 其他로 세분하였다. 응답한 업체의 크기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賣出規模別, 資産規模別, 純益規模別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1. 調査概要

본 조사의 목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調査對象業體의 選定은 韓國信用評價(株)에서 발행하는 『1993年 韓國企業總覽』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각 기업에 관한 基本的인 情報와 함께 財務諸表 및 損益計算書가 수록되어 있으며, 上場法人 694개, 登錄法人 2,288개, 尙장법인과 등록법인을 제외한 外監法人 3,317개 등 총 6,199개 업체에 대한 정보가 韓國標準產業分

類의 중분류별로 기재되어 있다.

본 조사의 대상업체 選定過程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上場法人 전수를 선정하였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登錄法人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추가로 선정한 등록법인을 합하여 조사 대상업체수가 업종별 100개 이상이 되는 업체는 매출액 순위로 약 60개 업체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업체 중 조사표 배포 전 주소확인 결과 지방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調査表와 商工會議所 公文을 먼저 조사 대상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전문조사원이 대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팩시밀리를 통하여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크게 會社의 概要, 再評價 實態 및 資産再評價制度에 대한 意見, 新減價償却制度에 대한 意見으로 나눌수 있다¹⁾. 조사표가 배포된 업체수는 총 978개사이고 이 중 45.1%에 해당하는 441개의 업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2. 調査對象業體의 特性 및 再評價의 實態

調査對象業體의 재무구조적 특성과 재평가를 시행한 실태를 파악한다. <表 IV-1>은 年間 賣出額, 資産 總計 및 當期純利益의 平均値를 통하여 조사 대상업체들의 특성을 나타낸다. 조사대상업체의 연간 평균매출액 규모는 2,411억원이고, 평균자산 총계는 4,111억 원이며, 1994년 기준 평균 當期純利益은 62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연간 평균매출액과 평균 자산총계에서는 낮았으며, 平均 當期純利益은 63억원으로 비제조업의 61억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1) 본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표는 <附錄 II>를 참고하기 바란다.

〈表 IV-1〉. 調査企業의 一般의 特性

(單位 : 개사, 백만원, 평균금액)

	업체수	연간매출액	자산 총계	당기순이익
전 체	441	241,167.5	411,172.2	6,260.6
산업구분				
제조업	291	216,529.2	233,758.9	6,338.2
비제조업	150	288,955.9	750,622.9	6,109.5
금융업	27	446,884.2	2,862,413.0	20,830.3
운수·보관업	23	295,518.8	404,248.9	4,588.7
건설업	21	262,880.6	439,770.6	4,603.3
도소매업	23	665,191.9	447,335.2	2,921.7
기타	56	64,903.6	115,833.4	1,399.7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5	11,062.4	19,013.6	256.5
200억~1,000억원	153	49,657.7	73,573.4	1,064.8
1,000억원 이상	160	604,068.5	1,043,813.1	15,925.9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4	16,005.3	13,454.5	321.3
250억~1,500억원	147	61,230.9	63,809.4	1,267.3
1,500억원 이상	156	607,448.8	1,080,124.1	15,931.7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5	98,391.5	122,713.6	-2,949.1
3억~25억원	154	76,497.9	96,222.5	1,057.9
25억원 이상	147	550,837.4	1,014,824.9	20,168.8

〈表 IV-2〉는 조사 대상업체 중에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 설립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54.4%였으며, 産業別로는 製造業(57.7%)이 非製造業(48.0%)보다 높게 나타났다. 業種別로는 運輸·保管業(65.2%), 金融業(63.0%) 등이 높았고, 建設業(33.3%)과 其他 業種(35.7%) 등이 낮게 나타났다. 規模別로는 전반적으로 大企業群이 中小企業群보다 높았다.

〈表 IV-2〉 資産再評價 實施 經驗 有無

(單位：개사, %)

	업체수	실시한 경험이 있다		실시한 경험이 없다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전체	441	240	54.4	201	45.6
산업구분					
제조업	291	168	57.7	123	42.3
비제조업	150	72	48.0	78	52.0
금융업	27	17	63.0	10	37.0
운수·보관업	23	15	65.2	8	34.8
건설업	21	7	33.3	14	66.7
도소매업	23	13	56.5	10	43.5
기타	56	20	35.7	36	64.3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5	46	36.8	79	63.2
200억~1,000억원	153	74	48.4	79	51.6
1,000억원 이상	160	12	75.0	40	25.0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4	36	26.9	98	73.1
250억~1,500억원	147	89	60.5	58	39.5
1,500억원 이상	156	113	72.4	43	27.6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5	56	41.5	79	58.5
3억~25억원	154	83	53.9	71	46.1
25억원 이상	147	100	68.0	47	32.0

〈表 IV-3〉은 조사 대상업체 중에서 資産再評價를 시행한 횟수이다. 전체적으로는 실시한 적이 없다(45.6%), 1회 실시(31.7%), 2회 실시(12.5%), 3회 실시(6.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시횟수는 0.9회이며, 제조업(1.0회)이 비제조업(0.8회)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業種別로는 금융업(1.2회), 제조업(1.0회), 운수·보관업(1.0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業體 規模別로는 大企業群이 中小企業群에 비해 재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表 IV-3〉 資産再評價 實施 回數

(單位：개사, %, 복수응답)

	업체 수	실시한적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평균 실시횟수
전 체	441	45.6	31.7	12.5	6.3	2.0	1.1	0.7	0.9
산업구분									
제조업	291	42.3	32.3	13.1	8.2	1.7	1.4	1.0	1.0
비제조업	150	5.20	30.7	11.3	2.7	2.7	0.7	0.0	0.8
금융업	27	37.0	40.7	3.7	7.4	7.4	3.7	0.0	1.2
운수·보관업	23	34.8	43.5	17.4	0.0	4.3	0.0	0.0	1.0
건설업	21	66.7	28.6	4.8	0.0	0.0	0.0	0.0	0.4
도소매업	23	43.5	21.7	34.8	0.0	0.0	0.0	0.0	0.9
기타	56	64.3	25.0	5.4	3.6	1.8	0.0	0.0	0.5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5	63.2	28.8	6.4	0.8	0.0	0.8	0.0	0.5
200억~1,000억원	153	51.6	34.0	9.8	3.9	0.7	0.0	0.0	0.7
1,000억원 이상	160	25.0	32.5	20.0	13.1	5.0	2.5	1.9	1.6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4	73.1	20.9	5.2	0.7	0.0	0.0	0.0	0.3
250억~1,500억원	147	39.5	38.8	13.6	6.1	1.4	0.7	0.0	0.9
1,500억원 이상	156	27.6	34.6	17.3	11.5	4.5	2.6	1.9	1.5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5	58.5	30.4	5.9	3.0	1.5	0.7	0.0	0.6
3억~25억원	154	46.1	29.2	16.9	5.2	1.3	0.6	0.6	0.9
25억원 이상	147	32.0	36.1	14.3	10.9	3.4	2.0	1.4	1.3

3. 資産再評價의 效果 및 再評價差額의 比較

기업은 소유한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財務構造 改善效果를 가지게 된다. 資産再評價制度의 財務改善 效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기 전과 후의 財務狀態와 土地資産에서 발생하는 資産再評價 差額의 比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表 IV-4〉는 資産再評價를 시행함으로써 조사 대상업체들의 자본과 자산규모의 변화와 資産再評價 差額을 업체당 평균치를 통하여 보여준다. 資産再評價 실시 후 차액 중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평균금액은 846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資産總額面에서는 2,860억원으로 전년대비 1.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資産再評價 差額은 377억원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으며, 業種別로는 기타 업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업, 운수·보관업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4〉 資本 및 資産 總額의 變化와 再評價差額

(單位 : 백만원, 평균금액)

	업체수	자본총액		자산총액		자산재평가 차액
		전년도	실시연도	전년도	실시연도	
전 체	441	41,926.3	84,614.9	221,600.6	286,085.7	37,719.4
산업구분						
제조업	291	47,723.8	96,315.9	201,740.1	269,039.4	42,902.4
비제조업	150	24,896.2	50,243.1	280,561.6	337,774.4	21,668.9
금융업	27	57,115.4	98,211.4	679,580.8	828,196.5	21,166.0
운수·보관업	23	8,739.8	22,507.0	69,832.9	99,856.3	9,835.4
건설업	21	18,305.5	49,998.5	88,956.5	141,982.5	28,477.5
도소매업	23	-2,300.9	7,631.1	68,648.5	92,556.1	28,013.1
기타	56	26,762.0	62,117.0	72,272.3	121,926.0	29,667.7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5	2,236.7	6,317.8	11,304.3	18,491.3	5,129.0
200억~1,000억원	153	8,988.8	20,367.9	32,221.7	48,882.7	9,061.2
1,000억원 이상	160	85,871.4	170,694.2	470,670.6	600,689.6	74,569.4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4	2,078.8	5,316.3	9,112.7	13,774.4	3,762.1
250억~1,500억원	147	7,169.2	16,326.0	28,503.0	41,048.4	7,802.7
1,500억원 이상	156	89,857.5	178,518.5	488,096.1	626,116.2	77,793.2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5	32,638.8	54,616.1	193,086.2	238,471.1	24,322.6
3억~25억원	154	10,827.4	33,940.1	53,328.2	87,585.4	22,012.9
25억원 이상	147	83,783.1	165,444.2	430,107.1	549,277.6	65,713.6

〈表 IV-5〉는 자산재평가 차액의 크기를 전체 자산재평가 차액을 100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자산재평가 차액이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資産再評價 差額은 累進的으로 높게 나타났다.

〈表 IV-5〉 資産再評價 差益 크기의 比較

(單位：백만원, 평균금액, %)

	업체수	자산재평가 평균차액	크기 비교 (전체=100.0)
전체	127	37,719.4	100.0
산업구분			
제조업	96	42,902.4	108.0
비제조업	31	18,667.9	39.1
금융업	11	21,166.0	56.1
운수·보관업	7	9,835.5	7.8
건설업	2	28,477.5	185.5
도소매업	8	28,013.1	103.3
기타	3	29,667.6	153.8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24	5,129.1	21.6
200억~1,000억원	26	9,061.2	49.1
1,000억원 이상	57	74,569.4	174.1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20	3,762.2	26.5
250억~1,500억원	50	7,802.8	40.6
1,500억원 이상	55	77,793.2	175.7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37	24,322.6	64.7
3억~25억원	45	22,012.9	62.1
25억원 이상	44	65,823.6	171.1

〈表 IV-6〉은 資産再評價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全體 資産再評價 差額 중에서 土地資産을 통한 비율을 보여준다. 자산재평가차액 중 土地資産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66.7%로 나타났으며, 業 鍾別로는 금융업(74.2%), 도소매업(70.1%), 기타 업종(68.5%), 제조업(67.0%) 순이며, 건설업(57%)과 운수·보관업(49.7%)이 낮게 나타났다. 賣出 資産規模別로는 小企業群이 中·大企業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純益規模面에서는 中企業群이 71.6%로 小企業群(66.0%), 大企業群(63.6%) 보다 높게 나타났다²⁾.

〈表 IV-6〉 資産再評價差額에서 土地資産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 개사, %)

	업 체 수	비 율
전 체	441	66.69
산업구분		
제조업	291	67.02
비제조업	150	65.88
금융업	27	74.21
운수·보관업	23	49.70
건설업	21	57.00
도소매업	23	70.08
기타	56	68.50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5	71.35
200억~1,000억원	153	65.89
1,000억원 이상	160	65.02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4	73.20
250억~1,500억원	147	67.60
1,500억원 이상	156	63.54
순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5	66.00
3억~25억원	154	71.64
25억원 이상	147	63.59

- 2) 資産再評價差額에서 土地資産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앞 章에서 보여준 집계자료에 의하면 1993년의 경우 80.4%로 나타났다. 企業調査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주는데 『국세통계연보』 통계치가 조사자료보다 신빙성이 더 높으므로 조사에 의한 통계치는 실제보다 과소집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IV-7〉은 기업이 土地資産에 대해 再評價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평가를 시행할 여부에 대한 반응이다. 土地資産에 대해 再評價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재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71.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業種別로는 운수·보관업과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規模別로는 大企業群이 中·小企業群에 비해 실시할 의향이 높았다.

〈表 IV-7〉 土地資産에 대한 再評價를 實施할 수 없을 境遇에 再評價 實施 意思

(單位：個社，%)

	업체수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전 체	263	16.0	71.1	12.9
산업구분				
제조업	183	15.3	71.0	13.7
비제조업	80	17.5	71.3	11.3
금융업	17	11.8	64.7	23.5
운수·보관업	13	30.8	69.2	0.0
건설업	7	42.9	57.1	0.0
도소매업	16	18.8	75.0	6.3
기타	27	7.4	77.8	14.8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62	4.8	80.6	14.5
200억~1,000억원	84	17.9	70.2	11.9
1,000억원 이상	117	20.5	66.7	12.8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51	11.8	74.5	13.7
250억~1,500억원	98	14.3	74.5	11.2
1,500억원 이상	112	18.8	67.0	14.3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70	8.6	75.7	15.7
3억~25억원	89	13.5	76.4	10.1
25억원 이상	103	22.3	64.1	13.6

4. 都賣物價指數에 對한 見解

현행 資産再評價制度는 都賣物價指數가 25% 이상 상승하였을 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都賣物價指數가 기업들이 체감하는 物價水準과는 乖離가 있기 때문에 25% 수준이 합리적이냐는 논의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表 IV-8〉은 현행 資産再評價를 할 수 있는 요건인 25% 이상의 都賣物價指數 상승에 대한 조사 대상업체의 견해를 보여준다. 현행 資産再評價制度에서 都賣物價指數의 상한선 25%선이 높다는 의견이 50.5%로 지배적이고, 적당하다가 32.9%, 낮은 편이다가 12.7%로 나타났다. 製造業과 非製造業 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업체규모에서는 中企業群이 他企業群에 비해 현재의 上限線이 높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表 IV-8〉 資産再評價 實施時 都賣物價指數 25%線에 對한 見解

(單位：個社，%)

	업체수	너무높다	약간높다	적당하다	약간낮다	너무낮다	무응답
전 체	432	17.4	33.1	32.9	10.4	2.3	3.9
산업구분							
제조업	286	18.2	32.9	36.0	8.4	2.1	2.4
비제조업	146	15.8	33.6	26.7	14.4	2.7	6.8
금융업	27	14.8	29.6	29.6	18.5	3.7	3.7
운수·보관업	23	21.7	34.8	21.7	17.4	0.0	4.3
건설업	19	5.3	52.6	15.8	21.1	5.3	0.0
도소매업	23	17.4	30.4	34.8	8.7	0.0	8.7
기타	54	16.7	29.6	27.8	11.1	3.7	11.1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0	16.7	27.5	35.0	11.7	3.3	5.8
200억~1,000억원	153	19.0	34.0	34.0	7.2	2.0	3.9
1,000억원 이상	156	15.4	37.2	30.1	12.8	1.9	2.6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0	12.3	26.9	35.4	15.4	4.6	5.4
250억~1,500억원	146	21.9	34.9	34.2	4.1	0.0	4.8
1,500억원 이상	152	16.4	37.5	28.9	12.5	2.6	2.0
순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1	12.2	30.5	37.4	10.7	3.8	5.3
3억~25억원	152	21.1	30.9	33.6	7.9	1.3	5.3
25억원 이상	144	17.4	37.5	28.5	13.2	2.1	1.4

5. 資産再評價 節次의 問題點

資産再評價制度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련비용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資産再評價를 시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企業들의 反應을 조사하였다.

〈表 IV-9〉는 現行 資産再評價를 하는 節次에 대한 調査 對象業體들의 견해이다. 現행 資産재평가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83%로 월등히 높고, 적당하다(11.7%)와 간단한 편이다(0.7%) 순으로 나타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製造業과 非製造業 간에 견해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業體規模 간에도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表 IV-9〉 現行 資産再評價 節次에 對한 見解

(單位：個社，%)

	업체수	너무 복잡하다	약간 복잡하다	적당하다	약간 간단하다	너무 간단하다	무응답
전체	428	19.9	63.1	11.7	0.5	0.2	4.7
산업구분							
제조업	283	23.3	61.1	12.0	0.7	0.4	3.5
비제조업	145	15.2	66.9	11.0	0.0	0.0	6.9
금융업	27	7.4	77.8	11.1	0.0	0.0	3.7
운수·보관업	23	13.0	60.9	21.7	0.0	0.0	4.3
건설업	19	15.8	78.9	5.3	0.0	0.0	0.0
도소매업	23	21.7	52.2	17.4	0.0	0.0	8.7
기타	53	17.0	66.0	5.7	0.0	0.0	11.3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19	23.5	64.7	5.9	0.0	0.8	5.0
200억~1,000억원	153	19.6	63.4	11.1	0.7	0.0	5.2
1,000억원 이상	154	16.9	61.7	16.9	0.6	0.0	3.9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0	18.5	70.8	4.6	0.0	0.8	5.4
250억~1,500억원	145	26.2	55.2	12.4	0.7	0.0	5.5
1,500억원 이상	150	14.7	65.3	16.0	0.7	0.0	3.3
순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1	22.9	61.1	10.7	0.0	0.0	5.3
3억~25억원	151	19.2	62.9	11.9	0.0	0.7	5.3
25억원 이상	142	17.6	64.8	12.7	1.4	0.0	3.5

〈表 IV-10〉은 企業들이 資産再評價를 準備하는 時間과 費用에 대해 느끼는 반응을 보여준다. 資産재평가 준비와 실시를 위한 正常業務 外의 時間과 費用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이 73.5%로, 적당하다(13.5%)와 적은 편이다(7.9%)보다 월등히 높았다. 賣出規模面에서는 소기업군(71.6%), 중기업군(71.2%), 대기업군(66.8%) 순으로 나타났으며, 資産·純益規模面에서는 대기업군이 중·소기업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表 IV-10〉 再評價時 關聯職員들의 再評價 準備와 實施을 위한 時間과 費用

(單位：個社, %)

	업체수	너무많다	약간많다	적당하다	약간적다	너무적다	무응답
전 체	416	31.0	42.5	13.5	5.3	2.6	5.0
산업구분							
제조업	279	34.4	41.6	12.9	4.7	2.9	3.6
비제조업	137	24.1	44.5	14.6	6.6	2.2	8.0
금융업	24	20.8	45.8	20.8	4.2	0.0	8.3
운수·보관업	22	13.6	63.6	22.7	0.0	0.0	0.0
건설업	18	33.3	44.4	11.1	11.1	0.0	0.0
도소매업	22	18.2	45.5	9.1	4.5	13.6	9.1
기타	51	29.4	35.3	11.8	9.8	0.0	13.7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16	25.9	45.7	12.9	4.3	4.3	6.9
200억~1,000억원	146	26.7	44.5	12.3	8.2	2.1	6.2
1,000억원 이상	151	38.4	38.4	15.2	3.3	2.0	2.6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25	24.0	47.2	12.8	6.4	3.2	6.4
250억~1,500억원	140	33.6	40.0	10.7	6.4	2.9	6.4
1,500억원 이상	147	34.7	40.8	16.3	3.4	2.0	2.7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125	26.4	44.8	13.6	5.6	4.8	4.8
3억~25억원	145	27.6	40.7	14.5	6.9	2.8	7.6
25억원 이상	141	38.3	41.8	12.8	3.5	0.7	2.8

〈表 IV-11〉은 자산재평가를 시행할 때 依賴機關에 支拂하는 鑑定手數料에 대한 반응이다. 再評價 依賴機關에 대해 지불하는 감정료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28.7%, 약간 많다는 의견이 53.4%로 전반적으로 많다는 의견이 82.1%로 높게 나타났다. 製造業과 非製造業 間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業體 規模面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表 IV-11〉 現行 資産再評價時 依賴機關의 鑑定料 規模

(單位：個社，%)

	업체수	너무 많다	약간 많다	적당하다	무응답
전 체	268	28.7	53.4	16.8	1.1
산업구분					
제조업	186	29.0	52.7	17.7	0.5
비제조업	82	28.0	54.9	14.6	2.4
금융업	18	33.3	55.6	11.1	0.0
운수·보관업	15	20.0	60.0	13.3	6.7
건설업	7	42.9	42.9	14.3	0.0
도소매업	17	29.4	47.1	23.5	0.0
기타	25	24.0	60.0	12.0	4.0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64	29.7	57.8	12.5	0.0
200억~1,000억원	83	24.1	54.2	20.5	1.2
1,000억원 이상	121	31.4	50.4	16.5	1.7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53	34.0	56.6	9.4	0.0
250억~1,500억원	98	28.6	50.0	19.4	2.0
1,500억원 이상	115	27.0	54.8	17.4	0.9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70	27.1	54.3	17.1	1.4
3억~25억원	92	32.6	50.0	16.3	1.1
25억원 이상	105	26.7	55.2	17.1	1.0

〈表 IV-12〉는 資産을 再評價하는 鑑定機關에 대한 信賴度이다. 資産재평가 기관의 감정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32.2%이

고,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27.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40.1%로 나타났다. 제조업(36.6%)이 비제조업(22.2%)보다 신뢰도가 더 높았으며, 건설업(42.9%)과 도소매업(37.5%)이 타 업종에 비해 더욱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業體 規模別로는 大企業群이 中·小企業群에 비해 再評價機關에 대한 信賴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2〉 資産再評價 機關들의 再評價에 對한 信賴度

(單位: 個社, %)

	업체수	정확하다	잘 모르겠다	정확하지 않다
전 체	267	32.2	40.1	27.7
산업구분				
제조업	186	36.6	38.2	25.3
비제조업	81	22.2	44.4	33.3
금융업	19	15.8	52.6	31.6
운수·보관업	15	26.7	46.7	26.7
건설업	7	28.6	28.6	42.9
도소매업	16	25.0	37.5	37.5
기타	24	20.8	45.8	33.3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61	29.5	37.7	32.8
200억~1,000억원	85	31.8	35.3	32.9
1,000억원 이상	121	33.9	44.6	21.5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51	29.4	37.3	33.3
250억~1,500억원	99	29.3	36.4	34.3
1,500억원 이상	115	34.8	45.2	20.0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68	26.5	42.6	30.9
3억~25억원	92	31.5	35.9	32.6
25억원 이상	106	36.8	41.5	21.7

〈表 IV-13〉은 현행 3%의 資産再評價稅率에 대한 기업의 반응도이다. 조사 대상업체 중 72%가 資産再評價稅率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業體 規模別로 반응을 살펴보면 소규모 업체일수록 세율이 높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表 IV-13〉 現行 資産再評價 稅額에 對한 意見

(單位：個社，%)

	업체수	너무높다	약간높다	적당하다	약간낮다	너무낮다	무응답
전 체	273	27.1	45.1	23.4	2.9	0.7	0.7
산업구분							
제조업	188	28.7	44.7	21.8	3.7	1.1	0.0
비제조업	85	23.5	45.9	27.1	1.2	0.0	2.4
금융업	19	21.1	42.1	31.6	5.3	0.0	0.0
운수·보관업	15	13.3	60.0	20.0	0.0	0.0	6.7
건설업	7	42.9	28.6	28.6	0.0	0.0	0.0
도소매업	17	35.3	35.3	29.4	0.0	0.0	0.0
기타	27	18.5	51.9	25.9	0.0	0.0	3.7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65	16.9	61.5	18.5	3.1	0.0	0.0
200억~1,000억원	86	29.1	39.5	24.4	4.7	1.2	1.2
1,000억원 이상	122	31.1	40.2	25.4	1.6	0.8	0.8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54	20.4	63.0	14.8	1.9	0.0	0.0
250억~1,500억원	100	31.0	41.0	20.0	5.0	1.0	2.0
1,500억원 이상	117	27.4	41.0	29.1	1.7	0.9	0.0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72	18.1	56.9	20.8	4.2	0.0	0.0
3억~25억원	94	27.7	40.4	27.7	2.1	1.1	1.1
25억원 이상	106	33.0	40.6	21.7	2.8	0.9	0.9

6. 任意性 問題

資産再評價制度는 강제적이지 않고 재평가 여부를 기업이 결정하는 任意制度이므로 企業間의 財務構造를 비교하는 데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資産再評價制度의 임의성을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살펴본다.

〈表 IV-14〉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을 때 재평가를 시행한 여부를 보여준다. 再評價를 할 수 있는 전체 업체 중에서 바로 실시한 업체는 단지 21% 정도이고, 대부분의 업체(79%)는 재평가를 유보하였다. 製造業과 非製造業 間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業體 規模面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재평가를 바로 시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表 IV-14〉 都賣物價上昇率이 25% 以上일 때 即時 再評價 實施 有無

(單位: 個社, %)

	업체수	바로 실시했다	바로 실시하지 않았다	무응답
전 체	259	20.5	79.2	0.4
산업구분				
제조업	177	20.3	79.1	0.6
비제조업	82	20.7	79.3	0.0
금융업	19	15.8	84.2	0.0
운수·보관업	15	33.3	66.7	0.0
건설업	7	0.0	100.0	0.0
도소매업	16	25.0	75.0	0.0
기타	25	20.0	80.0	0.0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57	12.3	86.0	1.8
200억~1,000억원	81	16.0	84.0	0.0
1,000억원 이상	121	27.3	72.7	0.0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47	12.8	85.1	2.1
250억~1,500억원	95	16.8	83.2	0.0
1,500억원 이상	116	26.7	73.3	0.0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68	13.2	85.3	1.5
3억~25억원	86	24.4	75.6	0.0
25억원 이상	104	22.1	77.9	0.0

再評價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바로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表 IV-15>와 같다. 현 상태의 財務構造에서 資産再評價 實施가 不必要하기 때문(76.7%)이라는 이유가 월등히 높으며,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의견은 9.6%로 나타났다. 기타항목으로는 자산구입 연도가 재평가 대상에 들지 않음(3.2%), 재평가 비용 고려후 실시(2.7%), 재평가 자산 없음(2.1%), 경영자가 자산증가를 원하지 않음(1.1%), 감가상각비 상승에 따른 이익감소·비용발생(1.1%), 자산의 증가를 희망하지 않음(0.5%), 일부 임의 재평가 실시(0.3%), 외국합작법인(0.3%), 여신 금지업종이라 재평가 필요없음(0.3%), 무응답(2.1%)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15〉 都賣物價上昇率이 25% 以上 上昇하였는데도 再評價를 實施하지 않은 理由

(單位：個社，%)

	업체수	자산재평가 실시 절차 복잡	현상태의 재무구조 에서 자산재평가 실시 불필요	기 타
전 체	374	9.6	76.7	13.7
산업구분				
제조업	245	12.7	75.5	11.8
비제조업	129	3.9	79.1	17.0
금융업	24	0.0	79.2	20.8
운수·보관업	19	0.0	84.2	15.8
건설업	20	5.0	85.0	10.0
도소매업	18	16.7	66.7	16.6
기타	48	2.1	79.2	18.7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15	13.0	73.9	13.1
200억~1,000억원	137	8.8	78.8	12.4
1,000억원 이상	120	7.5	77.5	15.0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27	11.8	79.5	8.7
250억~1,500억원	125	12.8	69.6	17.6
1,500억원 이상	120	4.2	81.7	14.1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120	9.2	79.2	11.6
3억~25억원	132	13.6	72.0	28.0
25억원 이상	118	5.9	80.5	13.6

資産再評價制度는 임의적이므로 企業間의 財務構造를 比較하는데 어렵다는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 企業의 反應을 살펴 본 결과는 <表 IV-16>과 같다. 再評價의 任意性 때문에 발생하는 財務諸表의 企業間 상호비교가 곤란한 점에 대해 상관없다는 의견이 10.2%이고,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大企業일수록 이러한 反應이 높게 나타났다. 金融業과 運輸·保管業의 경우에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도소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낮은 편이다.

<表 IV-16> 企業間 財務諸表의 相互比較에 對한 見解

(單位: 個社, %)

	업체수	상관 없다	잘 모르겠다	잘못되었다
전 체	430	10.2	17.4	72.3
산업구분				
제조업	286	10.1	18.5	71.3
비제조업	144	10.4	15.3	74.3
금융업	27	11.1	0.0	88.9
운수·보관업	23	13.0	4.3	82.6
건설업	19	5.3	21.1	73.7
도소매업	22	13.6	27.3	59.1
기타	53	9.4	20.8	69.8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0	9.2	21.7	69.2
200억~1,000억원	152	7.2	22.4	70.4
1,000억원 이상	155	13.5	9.7	76.8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1	9.9	24.4	65.6
250억~1,500억원	142	7.0	20.4	72.5
1,500억원 이상	153	12.4	9.2	78.4
순이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2	9.1	23.5	67.4
3억~25억원	149	7.4	19.5	73.2
25억원 이상	145	13.8	9.0	77.2

7. 資産再評價制度에 對한 綜合的 建議

〈表 IV-17〉은 現行 資産再評價制度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대상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요약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건의안은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제한 규정 폐지(23.9%), 재평가 절차의 간소화(21.6%), 25% 도매물가지수의 개선(19.3%), 자산재평가세의 인하(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건의안 중에서 재평가 절차의 간소화를 제외한 3가지 건의안은 企業側面에서는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社會側面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再評價 節次의 簡素化에 대한 건의안은 사회측면에서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기업의 행정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案이므로 資産再評價制度를 단순화하기 위한 정책개정이 있어야 하겠다.

資産再評價制度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資産再評價制度의 存廢與否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資産再評價制度를 직접 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資産再評價制度의 改正方向에 대한 반응은 〈表 IV-18〉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업체 중에서 資産再評價制度가 계속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6%이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 수준을 보여주었다. 반면 제도를 개정하여 존속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58%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및 업체규모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表 IV-17〉 資産再評價制度에 對한 建議事項

(單位：個社, %)

	업체수	비율
전체	88	23.9
비상각 자산(토지)의 재평가 제한 규정 폐지	21	23.9
재평가 절차의 간소화	19	21.6
25% 물가상승률 규정이 너무 높음	17	19.3
재평가세 인하	14	15.9
재평가 기준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함	8	9.1
물가상승률 규정보다 일정기간 경과후 의무적으로 재평가하도록	8	9.1
임의 평가방법은 문제 있음	8	9.1
자산재평가제도 폐지	7	8.0
재평가세 폐지	6	6.8
재평가 수수료 인하	5	5.7
재평가 제도 유지	4	4.6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3	3.4
재평가 자산 선별 작업으로 인한 업무부담 과중	3	3.4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기한을 5~7년으로 연장	2	2.3
자산재평가 신고 기한 연장	2	2.3
평가금액이 부정확	2	2.3
감정기관 확충	2	2.3
기타	9	10.2

註：기타항목으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감정기관의 준조세적 감정료 폐지, (2) 재평가 대상 판단 규정이 애매함, (3)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한 기업 홍보 강화, (4) 재평가제도로 인한 재무구조의 거품 현상, (5) 재평가 이후 8년 이내 주식상장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부담, (6) 재평가 일자 변경, (7) 기업공개 전 재평가제 폐지, (8) 토지자산 이외의 재평가 차액은 의미없음, (9) 재무정보 공개시 재평가 시점 공개

〈表 IV-18〉 現行 資産再評價制度의 存續 必要性

(單位：個社，%)

	업체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존속하되 개정해야 한다	모르겠다
전 체	433	26.1	8.1	58.0	7.9
산업구분					
제조업	287	26.1	8.4	58.9	6.6
비제조업	146	26.0	7.5	56.2	10.3
금융업	27	25.9	3.7	63.0	7.4
운수·보관업	23	17.4	8.7	65.2	8.7
건설업	19	42.1	10.5	47.4	0.0
도소매업	23	34.8	8.7	39.1	17.4
기타	54	20.4	7.4	59.3	13.0
매출규모별					
200억원 미만	122	23.0	8.2	59.8	9.0
200억~1,000억원	151	23.8	6.0	60.3	9.9
1,000억원 이상	157	29.9	10.2	54.8	5.1
자산규모별					
250억원 미만	132	22.7	7.6	60.6	9.1
250억~1,500억원	144	26.4	7.6	56.3	9.7
1,500억원 이상	153	28.1	9.2	57.5	5.2
순익규모별					
3억원 미만	132	31.1	7.6	52.3	9.1
3억~25억원	151	21.2	8.6	60.9	9.3
25억원 이상	145	26.2	8.3	60.7	4.8

8. 企業調査結果 要約

본 조사에서는 기업이 資産再評價를 運用하는 實態와 資産재평가 제도에 대해 느끼는 반응을 측정하였다. 資産再評價를 실시한 기업은 재평가 후의 자본총액이 재평가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再評價를 하는 주된 대상은 土地資産이며, 이는 우리나라 土地價格이 他資産의 가격에 비해 매우 높아 이를 통한 기업의 재평가차액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기업에게 土地資産을 재평가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아무런 자극책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資産再評價를 할 수 있는 요건인 25% 이상의 都賣物價指數는 매우 높은 것으로 기업들이 반응하였다. 그러므로 25% 도매물가지수의 수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資産再評價制度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行政費用과 鑑定 手數料 및 資産再評價稅率이 너무 높은 것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므로 제도를 단순화하고 행정비용과 資産再評價稅率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資産再評價制度의 任意性은 이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기업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資産재평가제도를 계속적으로 存置하되 부분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V. 資產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

여기에서는 資產再評價制度의 經濟적 效果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資產再評價制度의 편익과 費用을 규명하고, 모형을 통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減價償却制度의 經濟적 效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설명한 후, 資產再評價制度의 經濟적 效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1. 資產再評價制度의 便益과 費用

資產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便益과 費用을 식별하여야 한다. <表 V-1>은 資產再評價制度가 기업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업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익과 비용을 가지게 되고, 또한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편익과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資產再評價制度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資產再評價制度가 <表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부문에서 편익과 비용을 가져다 주지만, 이 중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편익과 비용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즉 기업은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감가상각액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자산재평가의 실시여부는 요건만 갖추면 기업의 선택사항이므로 자산재평가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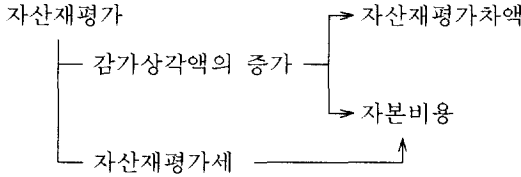
〈表 V-1〉 資産再評價制度의 便益과 費用

	기 업	사 회
편 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의 개선 — 자본비용의 감소 — 법인세부담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개의 촉진 ○ 투자촉진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재평가세 부담 ○ 수익관련지표의 하락 — 제조원가 상승 ○ 배당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간 비교곤란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간 재무구조의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表 V-1〉에 나타난 모든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교적 분석이 쉽고 중요한 요소만을 중심으로 측정해 본다. 자산재평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감가상각액이며, 이는 곧 재무구조와 자본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감가상각액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자산재평가차액은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이며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지표이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하는 자산재평가세액은 자산재평가차액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구해진다. 기업이 고정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자본비용은 감가상각액과 자산재평가세의 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資産再評價制度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圖 V-1]에서 보여주는 네 가지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측정한다.

[圖 V-1]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 測定



2.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資産再評價制度는 減價償却制度和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資産再評價制度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소유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크게 세 가지 정책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즉 資産別 耐用年數, 減價償却 方法, 殘存價額이 그것이며, 이러한 政策變數들이 역사적으로 변천한 과정을 살펴보면 1995년이 가장 획기적인 해이다. 資産再評價制度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減價償却制度를 199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는 현행 資産再評價制度가 1974년부터 실시된 반면, 減價償却制度는 1995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두 시점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資産再評價制度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稅務會計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 방법이 定率法에 따른다는 가정하에 稅法上 減價償却率(δ)은 資産別 耐用年數(T)와 殘存價額의 새로운 資産價格에 대한 比率(S)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delta = 1 - S^{\frac{1}{T}} \dots\dots\dots (1)$$

그러므로 정부에서 資産의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을 결정하면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세법상 감가상각률은 식 (1)에 의해 자연히 결정된다.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입한 후 i 년이 지난 減價償却額 $D(i)$ 는

다음과 같다.

$$D(i) = \delta(1-\delta)^{i-1} \dots\dots\dots (2)$$

고정자산의 세법상 耐用年數가 T인 경우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를 첫째 말을 기준으로 세후 할인율이 r로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Z = \delta \sum_{i=1}^T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dots\dots\dots (3)$$

그러므로 1995년 이전의 舊減價償却制度下에서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_1^0 는 위의 식 (3)과 같으며, 이때 δ 는 10% 잔존가액에서 구한다¹⁾.

$$Z_1^0 = \delta \sum_{i=1}^T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dots\dots\dots (4)$$

여기서 $\delta = 1 - (0.1)^{\frac{1}{T}}$

반면 1995년 이후의 신감가상각제도에서는 5% 잔존가액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률을 구하고, 마지막 해에 5% 잔존가액을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므로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_2^0 는 다음과 같다.

$$Z_2^0 = \delta \sum_{i=1}^T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 \frac{(1-\delta)^T}{(1+\gamma)^{T-1}} \dots\dots\dots (5)$$

여기서 $\delta = 1 - (0.05)^{\frac{1}{T}}$

式 (5)에서 式 (4)와 차이점은 오른쪽 두번째 항이며 이는 T년이 지난 후 잔존가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Z_1^0 과 Z_2^0 를 비교함으로써 1995년에 도입된 新減價償却制度가 減價償却額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1) 수식표현 Z_i 에 대해 편의상 하첨자 i 가 1일 경우에는 舊減價償却制度를 의미하고, 2일 경우는 新減價償却制度를 의미한다. 상첨자 j 는 자산 재평가를 시행한 횟수를 의미한다.

기업이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인 資本費用(cost of capital)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Hall and Jorgenson(1967)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C = \frac{p(r+d)(1-k-uZ)}{(1-u)} \dots\dots\dots (6)$$

여기서 p : 자산의 단위가격
 r : 이자율
 d : 경제적 감가상각률
 k : 투자세액공제율
 u : 법인세율
 Z :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는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1995년에 폐지되었으므로 이 효과를 배제한 자본비용의 관계식을 사용한다²⁾. 그러므로 舊減價償却制度의 자본비용 C_1^0 과 新減價償却制度의 자본비용 C_2^0 를 비교함으로써 減價償却制度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C_1^0 = \frac{p(r+d)(1-uZ_1^0)}{(1-u)} \dots\dots\dots (7)$$

$$C_2^0 = \frac{p(r+d)(1-uZ_2^0)}{(1-u)} \dots\dots\dots (8)$$

3. 舊減價償却制度下에서 資產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

자산재평가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資產再評價制度는 再評價日 現在 取得日(혹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편

2) 臨時投資稅額控除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국산기계설비에 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7%(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 경우는 10%)를 공제하였다.

의상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도매물가상승률이 25%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假定한다³⁾.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적 效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固定資産의 耐用年數 중에 자산재평가가 한번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본다. 이때 減價償却制度를 199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자산재평가제도의 經濟적 效果를 분석한다. 먼저 1995년 이전의 舊減價償却制度下에서 자산재평가의 經濟적 效果를 살펴 본다. i 년도의 都賣物價上昇率을 π_i 로 표기할 때, 세법상 耐用年數가 T 인 固定資産을 소유한 기업이 (T_1-1) 시점까지의 도매물가지수의 합이 25%를 초과하였을 때, T_1 시점에서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_1' 은 다음과 같다.

$$Z_1' = \delta \sum_{i=1}^{T_1-1}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 \delta(1+\bar{\pi}_1) \sum_{i=T_1}^T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dots\dots(9)$$

$$\text{여기서 } \bar{\pi}_1 = \sum_{i=1}^{T_1-1} \pi_i, \quad \bar{\pi}_1 \geq 0.25$$

여기서 π_i 는 i 해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bar{\pi}_1$ 는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도매물가상승률의 합계를 의미한다. 식 (9)의 오른편 첫번째 항은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의 감가상각액 현재가치의 합계이고, 두번째항은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T_1 해의 자산재평가차액 Δ_1' 은 T_1 의 시작점(혹은 T_1-1 의 마지막점)에서 자산재평가 전후의 잔존가액의 차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郭泰元(1985)에서도 재평가일까지의 누적된 도매물가상승률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begin{aligned} Z_i^1 &= (1 + \bar{\pi}_1)(1 - \delta)^{T_1 - i} - (1 - \delta)^{T_1 - i} \dots\dots\dots (10) \\ &= \bar{\pi}_1(1 - \delta)^{T_1 - i} \end{aligned}$$

그러므로 기업이 부담하는 자산재평가세액은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자산재평가세를 t를 곱해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첫해의 마지막점을 기준으로 한 현재가치 R_i¹은 다음과 같다.

$$R_i^1 = t \bar{\pi}_1 \left(\frac{1 - \delta}{1 + \gamma} \right)^{T_1 - i} \dots\dots\dots (11)$$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한번 실시하는 간단한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내용연수 T 기간 동안 n차례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다. 기업이 소유한 고정자산의 세법상 내용연수는 T이고 이 기간 동안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인 누적된 도매물가상승률이 25% 이상 일 때 반드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고 假定하자. 그러므로 모두 n차례의 자산재평가가 실시되고, 자산재평가가 실시된 시점을 T_i(i=1, ..., n)라고 표현한다. 이때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_iⁿ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Z_i^n = \delta \sum_{j=0}^n \left[\prod_{k=0}^j (1 + \bar{\pi}^k) \right] \left[\sum_{i=T_1}^{T_{i+1}-1} \left(\frac{1 - \delta}{1 + \gamma} \right)^{n-1} \right] \dots\dots\dots (12)$$

여기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시점인 T_i(i=0, ..., n)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일어난다.

$$\sum_{k=T_{i-1}}^{T_i-2} \pi_k < 0.25 \leq \sum_{k=T_{i-1}}^{T_i-1} \pi_k$$

여기서 수식 표현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begin{aligned} \bar{\pi}_i &= \sum_{k=T_{i-1}}^{T_i-1} \pi_k \quad (i = 1, \dots, n) \\ T_0 &= 1, \quad T_{n+1} = T + 1, \quad \bar{\pi}_0 = 0 \end{aligned}$$

그러므로 자산재평가를 n번째 할 때의 자산재평가차액 Δ^n 과 기업이 부담하는 자산재평가세액 R_1^n 은 다음과 같다.

$$\Delta^n = (1-\delta)^{T_n-1} \left[\prod_{i=1}^n (1+\bar{\pi}_i) - \prod_{i=1}^n (1+\bar{\pi}_{i-1}) \right] \dots\dots\dots(13)$$

$$\begin{aligned} R_1^n &= t\Delta^n \\ &= t(1-\delta)^{T_n-1} \left[\prod_{i=1}^n (1+\bar{\pi}_i) - \prod_{i=1}^n (1+\bar{\pi}_{i-1}) \right] \dots\dots\dots(14) \end{aligned}$$

그러므로 n번째까지의 자산재평가차액 합계의 현재가치 Δ 과 자산재평가세액 합계의 현재가치 R_1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lta = \sum_{j=1}^n \left(\frac{1-\delta}{1+\gamma} \right)^{T_j-1} \left[\prod_{i=1}^j (1+\bar{\pi}_i) - \prod_{i=1}^j (1+\bar{\pi}_{i-1}) \right] \dots\dots\dots(15)$$

$$\begin{aligned} R_1 &= t\Delta \\ &= t \sum_{j=1}^n \left(\frac{1-\delta}{1+\gamma} \right)^{T_j-1} \left[\prod_{i=1}^j (1+\bar{\pi}_i) - \prod_{i=1}^j (1+\bar{\pi}_{i-1}) \right] \dots\dots\dots(16) \end{aligned}$$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산재평가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본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자산재평가세를 고려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 C_1 은 다음과 같다.

$$C_1 = \frac{p(r+d)(1-uZ_1+R_1)}{(1-u)} \dots\dots\dots(17)$$

4. 新減價償却制度下에서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

1995년 이후 새로운 減價償却制度下에서 자산재평가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먼저 내용연수 T 기간 동안 자산재평가를 한번만 하는 경우,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_2^1 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Z_2^1 &= \delta \sum_{i=1}^{T_1-1}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 \delta(1-\bar{\pi}_1) \sum_{i=T_1}^T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 &\quad + (1+\bar{\pi}_1) \frac{(1-\delta)^T}{(1+\gamma)^{T-1}} \end{aligned}$$

$$\text{여기서 } \delta = 1 - (0.05)^{\frac{1}{T}} \dots\dots\dots (18)$$

舊減價償却制度下에서 式 (9)의 Z₁과의 차이점은 감가상각률이 5%의 잔존가액하에서 이루어지며 T해에 5%의 잔존가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므로 式 (18) 오른쪽의 마지막 항이 추가된다. 이를 자산재평가를 n번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Z_2^n = \delta \sum_{j=0}^n \left[\prod_{k=0}^j (1 + \bar{\pi}_k) \right] \left[\sum_{i=T_j}^{T_{j+1}-1} \left(\frac{1-\delta}{1+\gamma} \right)^{i-1} \right] + \frac{(1-\delta)^T}{(1+\gamma)^{T-1}} \prod_{i=1}^n (1 + \bar{\pi}_i)$$

$$\text{여기서 } \delta = 1 - (0.05)^{\frac{1}{T}} \dots\dots\dots (19)$$

新減價償却制度下에서 자산재평가가 자산재평가차액 Δ_2 와 자산재평가세액 R₂에 미치는 효과는 구제도하에서의 式 (15)와 (16)의 표현과 같다. 단지 다른 점은 구제도하에서는 감가상각률이 10% 잔존가액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신제도하에서는 5% 잔존가액에 의해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₂가 결정된다.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본비용의 변화도 구제도하에서의 式 (17)과 같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자본비용 C₂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_2 = \frac{p(r+d)(1-uZ_2+R_2)}{(1-u)} \dots\dots\dots (20)$$

5. 分析 結果

이상의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資産再評價制度의 경제적 효과를 도의실험을 통하여 살펴본다. 먼저 새로 개정된 減價償却制度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資産再評價制度의 경제적 효과를 舊減價償却制度和 新減價償却制度의 두 가지 환경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한

다. 경제적 효과는 위에서 보여준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 資産再評價額, 資産再評價稅額, 資本費用의 수식을 사용했다. 여기서 자본비용의 측정은 분석의 편의상 공통되는 $p(r+d)$ 는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나타내는 부분인 $(1-uZ+R)/(1-u)$ 만을 사용했다.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세제변화에 따른 자본비용의 상대적인 변화이지 수치의 절대치 변화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⁴⁾.

가.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1995년에 시행된 새로운 減價償却制度의 가장 큰 특징은 殘存價額의 廢止와 資産別 耐用年數의 短縮을 들 수 있다. 잔존가치는 폐지하였지만 정률법을 사용할 경우에 단순히 5% 잔존가치율을 계산상으로 사용하여 감가상각률을 결정하고 末년에 5% 잔존가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구제도와 비교를 위해 신제도를 5% 잔존가치율로 보고 그 효과를 감가상각률을 통해 살펴본다. 물론 신제도에서는 말년에 5%의 잔존가액마저 상각이 가능하므로 실제의 감가상각률은 이보다 조금 높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잔존가액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式 (4)와 (5)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表 V-2>와 같다. 耐用年數가 5년인 자산의 경우 잔존가치 정책의 변화로 인해 매년 감가상각되는 비율이 36.9%에서 45.07%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신제도에서는 잔존가액뿐 아니라 내용연수도 동시에 단축하였으므로 전체 효과는 내용연수의 단축효과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매년 감가상각

4) 자본비용을 나타내는 수식에서 稅制를 나타내는 부분만을 사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p(r+d)$ 에서 d 는 경제적 의미의 감가상각률이지만 우리나라 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玄鎭權(1994b)은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으나 운수자산에 국한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代表値로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되는 비율이 36.9%에서 63.16%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表 V-2〉 殘存價値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率의 變化

(單位: %)

내 용 연 수	잔 존 가 치 율	
	10%	5%
3	0.5358	0.6316
4	0.4377	0.5271
5	0.3690	0.4507
6	0.3187	0.3930
7	0.2803	0.3482
8	0.2501	0.3123
9	0.2257	0.2831
10	0.2057	0.2589
15	0.1423	0.1810
20	0.1087	0.1391
30	0.0739	0.0950
40	0.0559	0.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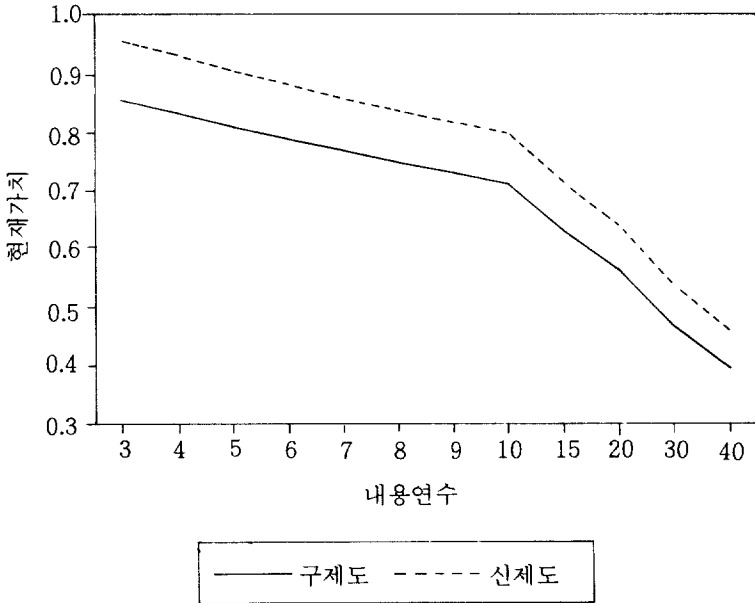
1995년에는 감가상각제도의 개정뿐 아니라 법인세율도 32%에서 30%로 인하되었다. 〈表 V-3〉은 이들 개정 효과를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와 자본비용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잔존가액 정책의 독립적인 효과는 法人稅率이 32%로 일정하다는 假定下에 그 효과를 파악하고, 잔존가액 변화와 법인세율 인하의 복합적인 효과를 별개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圖 V-2]는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에 대한 〈表 V-3〉의 결과를 알기 쉽게 나타내었다. 殘存價額政策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비용처리하는 減價償却額의 현재가치는 모든 耐用年數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圖 V-3]은 감가상각제도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법인세율이 32%와 30%인 두 경우에 대해 보여준다. 法人稅率 引下效果를 고려하지 않

고 減價償却制度의 독립적인 改正效果만을 보면 자본비용의 감소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자본비용의 감소효과에 작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95년의 새로운 減價償却制度和 法人稅率 引下의 두 가지 정책변수를 비교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에 감가상각제도가 훨씬 유효한 정책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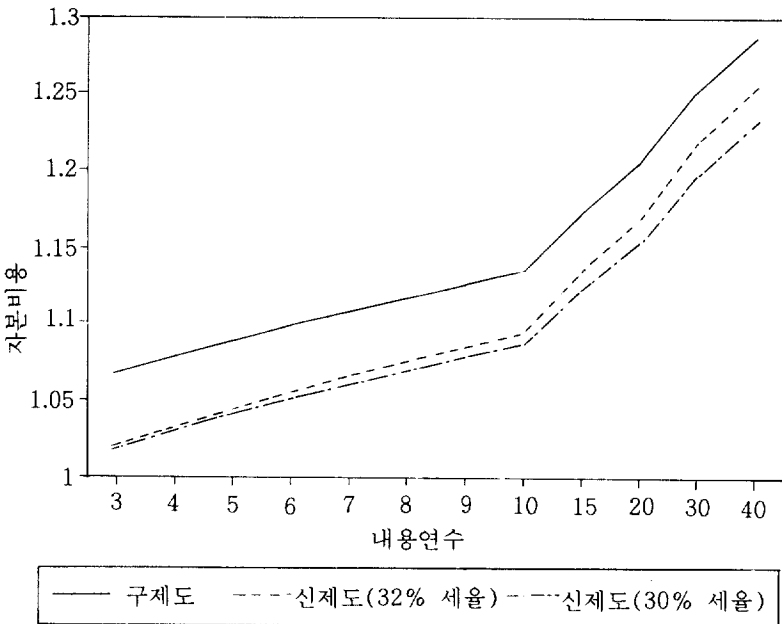
〈表 V-3〉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내용연수	10% 잔존가액		5% 잔존가액 후 상각		
	감가상각 현재가치	자본비용	감가상각 현재가치	자본비용 (법인세율=32%)	자본비용 (법인세율=30%)
3	0.8574	1.0671	0.9553	1.0210	1.0192
4	0.8343	1.0780	0.9306	1.0327	1.0297
5	0.8117	1.0886	0.9065	1.0440	1.0401
6	0.7900	1.0988	0.8832	1.0550	1.0501
7	0.7692	1.1086	0.8609	1.0655	1.0596
8	0.7492	1.1180	0.8395	1.0756	1.0688
9	0.7300	1.1271	0.8190	1.0852	1.0776
10	0.7116	1.1357	0.7994	1.0944	1.0860
15	0.6306	1.1739	0.7133	1.1349	1.1229
20	0.5645	1.2049	0.6434	1.1678	1.1528
30	0.4647	1.2519	0.5376	1.2176	1.1982
40	0.3937	1.2853	0.4618	1.2533	1.2307

[圖 V-2] 減價償却制度和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變化



[圖 V-3] 減價償却制度和 資本費用의 變化



지금까지의 분석은 減價償却制度의 變化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로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자산별 내용연수의 단축을 포함한 減價償却制度의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다. 新減價償却制度의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假定이 필요하다. <表 V-4>는 減價償却制度의 變化와 法人稅率의 變化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자산별 내용연수는 舊制度下에서는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는 반면, 新制度下에서는 업종별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매우 간소화되었다⁵⁾. 그러므로 업종별 및 자산별로 각각 다른 변화를 가지므로 이를 한 개의 지표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有形資産 중에서 기계장치를 중심으로 減價償却制度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⁶⁾. 玄鎭權(1994a)에 따르면 舊制度下에서 우리나라 기계장치의 平均耐用年數를 8.07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즉 新制度가 舊制度에 비해 얼마만큼의 내용연수 단축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세 가지 대안에 대해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제도하에서 8년을 기준으로 6년, 5년, 4년으로 각각 단축하였을 경우 세 가지 대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세 가지 대안은 구제도의 내용연수보다 각각 25%, 37.5%, 50%의 단축효과를 보여준다.

-
- 5) 舊制度下에서 자산별 내용연수의 구분은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은 274개, 기계장치는 317개로 나누어 총 591개로 구분하였다.
 - 6) 기계장치는 건물 등의 부동산에 비해 내용연수가 짧기 때문에 감가상각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는 기계장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방법론은 그대로 부동산 등의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表 V-4〉 法人稅制의 變化

	구 제 도	신 제 도	효 과
잔존가치율	10%	0%	
평균내용연수	8년	제1안 : 6년 제2안 : 5년 제3안 : 4년	25% 감소 37.5% 감소 50% 감소
법인세율	32%	30%	

〈表 V-5〉는 감가상각제도의 변화와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해 減價償却率, 減價償却額, 資本費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먼저 내용연수가 8년에서 6년으로 변할 때 자본비용은 약 6% 감소하고, 5년으로 변할 때 7%, 4년으로 변할 때 8%의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1995년 새로운 감가상각제도가 도입되고 법인세율이 2% 인하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은 약 6~8% 가량 감소하게 된다.

〈V-5〉 法人稅制 變化의 經濟的 效果

	구제도	신 제 도		
		6년	5년	4년
평균내용연수	8년	6년	5년	4년
감가상각률	100	157.1	180.2	210.8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100	117.9	121.0	124.2
자본비용	100	93.9	93.0	92.1

나. 資產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

자산재평가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가정하에서 그 효과를 측정했다. 資產再評價制度는 減價償却制度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감가상각의 구제도와 신제

도를 각각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산재평가제도는 1975년 이후 기본골격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감가상각제도는 1995년에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자산재평가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두 가지 감가상각제도를 고려함으로써 자산재평가제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資産再評價는 누적된 都賣物價上昇率이 25% 이상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假定하였으므로, 도매물가상승률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해 減價償却額, 再評價差額, 再評價稅額 및 資本費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의 편의상 都賣物價上昇率과 名目割引率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 살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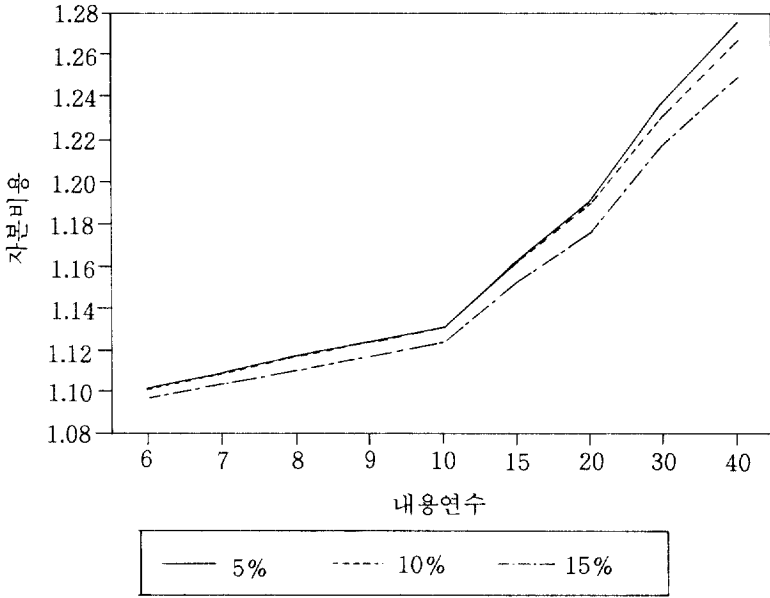
- (1) 도매물가상승률 5%, 명목할인을 10%
- (2) 도매물가상승률 10%, 명목할인을 15%
- (3) 도매물가상승률 15%, 명목할인을 20%

〈表 V-6〉은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式 (15), (16), (17)을 사용하여 자산재평가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舊減價償却制度和 新減價償却制度下에서 보여준다. 자산재평가제도가 기업의 재평가차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어진 내용연수에 대해 신제도보다 구제도에서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都賣物價上昇率과 名目割引率의變化에 따라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는 다르게 나타나며 [圖 V-4]와 [圖 V-5]는 舊制度和 新制度下에서 〈表 V-6〉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예상했듯이 都賣物價指數가 클수록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구제도와 신제도에서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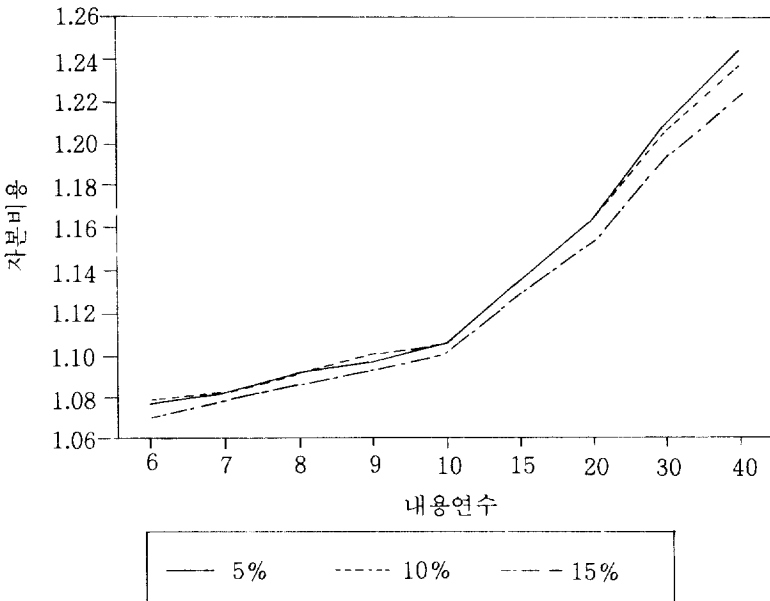
〈表 V-6〉 資産再評價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

도매물가상승률=5%, 명목할인율=10%									
내용 연수	재평가 횟 수	구 제 도				신 제 도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재평가 차액	재평가 세액	자본비용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재평가 차액	재평가 세액	자본비용
6	1	0.79729	0.02278	0.00068	1.09640	1.02204	0.01279	0.00038	0.99110
7	1	0.78306	0.02997	0.00090	1.10341	1.00787	0.01827	0.00055	0.99741
8	1	0.76891	0.03681	0.00110	1.11037	0.99233	0.02387	0.00072	1.00431
9	1	0.75482	0.04319	0.00130	1.11728	0.97589	0.02939	0.00088	1.01159
10	1	0.74080	0.04909	0.00147	1.12414	0.95890	0.03471	0.00104	1.01910
15	2	0.68518	0.09801	0.00294	1.15248	0.89224	0.07354	0.00221	1.04933
20	3	0.63780	0.14202	0.00426	1.17671	0.83182	0.11023	0.00331	1.07680
30	5	0.55977	0.21516	0.00645	1.21666	0.72966	0.17401	0.00522	1.12332
40	7	0.49785	0.27220	0.00817	1.24832	0.64799	0.22611	0.00678	1.16055
도매물가상승률=10%, 명목할인율=15%									
내용 연수	재평가 횟 수	구 제 도				신 제 도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재평가 차액	재평가 세액	자본비용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재평가 차액	재평가 세액	자본비용
6	1	0.78680	0.06238	0.00187	1.10308	1.00261	0.04411	0.00132	1.00077
7	2	0.77417	0.09696	0.00291	1.11055	0.99809	0.06756	0.00203	1.00372
8	2	0.76050	0.11316	0.00339	1.11770	0.98151	0.08197	0.00246	1.01144
9	2	0.74606	0.12788	0.00384	1.12514	0.96337	0.09555	0.00287	1.01979
10	3	0.73486	0.15936	0.00478	1.13180	0.95615	0.11797	0.00354	1.02385
15	4	0.67867	0.24731	0.00742	1.16213	0.88357	0.19432	0.00583	1.05823
20	6	0.63161	0.33629	0.01009	1.18819	0.82490	0.26955	0.00809	1.08660
30	9	0.55297	0.47310	0.01419	1.23124	0.72049	0.39233	0.01177	1.13660
40	13	0.49093	0.58292	0.01749	1.26528	0.63977	0.49319	0.01480	1.17552
도매물가상승률=15%, 명목할인율=20%									
내용 연수	재평가 횟 수	구 제 도				신 제 도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재평가 차액	재평가 세액	자본비용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재평가 차액	재평가 세액	자본비용
6	2	0.79676	0.13722	0.00412	1.10170	1.01654	0.10228	0.00307	0.99730
7	3	0.78481	0.18195	0.00546	1.10929	1.01157	0.13550	0.00406	1.00085
8	3	0.77063	0.20682	0.00620	1.11706	0.99306	0.15852	0.00476	1.00977
9	4	0.75940	0.24886	0.00747	1.12420	0.98568	0.19047	0.00571	1.01430
10	4	0.74658	0.27327	0.00820	1.13131	0.96735	0.21327	0.00640	1.02313
15	7	0.69321	0.43029	0.01291	1.16335	0.90632	0.34362	0.01031	1.05487
20	9	0.64583	0.55563	0.01667	1.19118	0.84272	0.45405	0.01362	1.08687
30	14	0.56749	0.76968	0.02309	1.23749	0.73992	0.64502	0.01935	1.13911
40	19	0.50489	0.93498	0.02805	1.27424	0.65724	0.79827	0.02395	1.18111

[圖 V-4] 都賣物價指數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 舊制度



[圖 V-5] 都賣物價指數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 新制度



資産再評價制度가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본비용을 구한 <表 V-3>의 결과를 <表 V-6>의 결과와 비교한다. 資産再評價制度가 없을 경우, 기업의 자본비용과 자산재평가제도가 시행될 경우의 자본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자산재평가제도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資本費用을 100으로 할 때 자산재평가를 시행했을 때의 자본비용을 환산한다. 그러므로 자산재평가제도가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100의 값을 가지게 되고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제도가 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表 V-7>은 감가상각의 舊制度和 新制度下에서 자산재평가제도의 효과를 보여준다⁷⁾. 자산재평가제도는 구제도와 신제도 모두에서 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같은 수준의 도매물가 상승률과 명목할인율하에서 자본비용의 감소크기를 비교하면 신제도가 구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V-7> 資産再評價制度和 資本費用

내용연수	구 제 도			신 제 도		
	$\pi=5\%$ $\gamma=10\%$	$\pi=10\%$ $\gamma=15\%$	$\pi=15\%$ $\gamma=20\%$	$\pi=5\%$ $\gamma=10\%$	$\pi=10\%$ $\gamma=15\%$	$\pi=15\%$ $\gamma=20\%$
6	99.8	98.6	97.0	95.2	93.6	91.9
7	99.5	98.2	96.4	95.0	92.5	91.0
8	99.3	97.5	96.0	94.0	92.5	90.7
9	99.1	97.4	95.5	93.9	92.4	90.2
10	99.0	97.1	95.2	93.8	91.9	90.0
15	98.2	96.0	94.0	93.4	91.4	89.1
20	97.7	95.5	93.6	93.4	91.3	89.3
30	97.2	95.3	93.9	93.8	91.9	90.2
40	97.1	95.6	94.6	94.3	91.5	91.4

註: π 는 도매물가상승률, γ 는 명목할인율을 의미함.

7) 앞서와 같이 舊減價償却制度에서는 법인세율을 32%로 적용한 반면, 新制度下에서는 3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다.

이상에서 보여 준 결과는 자산재평가세율은 3%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다. 위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산재평가세율이 변화할 때 자본비용의 효과를 분석한다. <表 V-8>은 자산재평가세율이 각각 0%, 3%, 5%, 10%일 경우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자본비용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을 때의 자본비용과 비교한 결과이다. 즉 93이 가지는 의미는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본비용은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을 때보다 0.93 수준임을 말한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도매물가지수와 명목할인율의 세 가지 가정하에서 자산재평가세율이 0%인 경우에도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는 자산재평가세로 인한 자본비용의 증가분보다 감가상각액의 증가로 인한 자본비용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산재평가세율이 3%, 5%, 10%로 증가하여도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는 資産再評價稅는 企業의 資本費用의 變化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

〈表 V-8〉 資産再評價稅率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도매물가상승률=5%, 명목할인율=10%				
내용연수	0%	3%	5%	10%
6	94.3	94.4	94.4	94.5
7	94.3	94.1	94.2	94.4
8	93.9	94.0	94.0	94.2
9	93.8	93.9	94.0	94.1
10	93.7	93.8	93.9	94.2
15	93.2	93.4	93.6	94.1
20	93.0	93.4	93.7	94.4
30	93.1	93.8	94.2	95.2
40	93.5	94.3	94.8	96.1
도매물가상승률=10%, 명목할인율=15%				
내용연수	0%	3%	5%	10%
6	93.4	93.6	93.7	94.0
7	92.6	92.8	93.0	93.4
8	91.8	92.5	92.8	93.3
9	92.0	92.4	92.6	93.2
10	91.4	91.9	92.2	92.9
15	90.7	91.4	91.9	93.1
20	90.3	91.3	91.9	93.5
30	90.5	91.9	92.8	95.0
40	91.0	92.7	93.8	96.6
도매물가상승률=15%, 명목할인율=20%				
내용연수	0%	3%	5%	10%
6	91.5	91.9	92.2	92.9
7	91.2	91.0	91.4	92.3
8	90.1	90.7	91.2	92.2
9	89.4	90.2	90.6	91.8
10	89.2	90.0	90.6	91.9
15	87.9	89.1	90.0	92.0
20	87.7	89.3	90.4	93.0
30	88.0	90.2	91.7	95.3
40	88.8	91.4	93.2	97.6

6. 結 論

이 章에서는 資産재평가제도의 經濟적 效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몇 개의 가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效果를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 資産再評價額, 資産再評價稅額, 資本費用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1995년에 도입된 새로운 감가상각제도와 구제도의 經濟적 效果를 비교할 때, 신제도하에서 기업에 주어지는 재평가차액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폭은 구제도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새로운 감가상각제도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이 이미 약 6~8% 낮아졌기 때문이다. 資産재평가세의 부담이 높다는 일반적인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감가상각제도하에서 資産재평가세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政策의 目的이 기업이 부담하는 資本費用의 減少에 있다면 減價償却制度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감가상각제도로 인해 資産재평가차액이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資産재평가제도의 주된 목적인 財務構造의 改善效果는 減少하게 되었다. 그러나 資産재평가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새로운 감가상각제도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VI. 資産再評價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1. 資産再評價制度의 問題點

지금까지 資産再評價制度의 現況과 여러 가지 特性에 대한 實證分析和 模擬實驗을 통해 經濟的 效果를 살펴 보았다. 本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現行 資産재평가제도가 가지는 問題點을 지적하고 논의해 본다.

가. 企業間 財務狀態 比較의 어려움

現行 資産재평가제도에 의하면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한 경우에 기업이 任意的으로 再評價의 施行與否를 선택할 수 있다. 都賣物價指數 25%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은 物價上昇의 速度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10년 정도의 시간을 요하므로 그만큼 재평가를 하는 빈도는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은 기업간에는 재무상태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問題點은 재평가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매년 실시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非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매물가지수가 25%인 시점에서 두 개의 기업이 동시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업이 임의적으로 재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한 기업과 시행하지 않은 기업간에는 數值上으로 企業의 財務狀態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조사에 의하면 再評價 要件이 되는 기업의 80%가 재평가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당시의 재무구조에서는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업은 財務構造改善을 가장 極大化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財務構造의 任意性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의 전달은 잘못되었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기업의 72%를 차지하여 기업들도 자산재평가제도의 任意性 問題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再評價 對象資産 中 土地偏重 現象

자산재평가제도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減價償却額을 現實化하기 위한 制度이지만 현재 기업이 재평가를 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土地에 偏重되어 있다. <表 VI-1>에 의하면 1993년의 경우 전체 재평가차액 중에서 토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企業의 有無形 資産은 단지 18%만을 차지할 뿐이다. 또한 土地의 再評價額은 帳簿價額의 16.7배이나 유무형 감가상각자산은 1.7배일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 토지가격의 상승속도가 유무형 고정자산의 가격상승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름을 보여준다. <表 VI-2>와 [圖 VI-1]은 都賣物價指數, 小賣物價指數, 地價指數의 상승추세를 1974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1993년에 도매물가지수는 396, 소매물가지수는 618, 지가지수는 1,744로 지가지수의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업은 유무형 감가상각자산보다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재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토지시장이 가지는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인해 他 財貨에 비해 價格上昇 速度가 높은 현실에서 재평가제도는 기업에게 土地需要를 促進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기업이 토지를 재평가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資本利得課稅를 回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土地資産을 讓渡하기 직전에 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양도차액을 대폭 줄일

〈表 VI-1〉 資産別 再評價의 偏重(1993)

(單位：%, 배)

	유무형 감가상각자산	토 지
재평가차액의 구성비	18	80.4
재평가액/장부가액	1.68	16.66

〈表 VI-2〉 物價指數와 地價指數의 變動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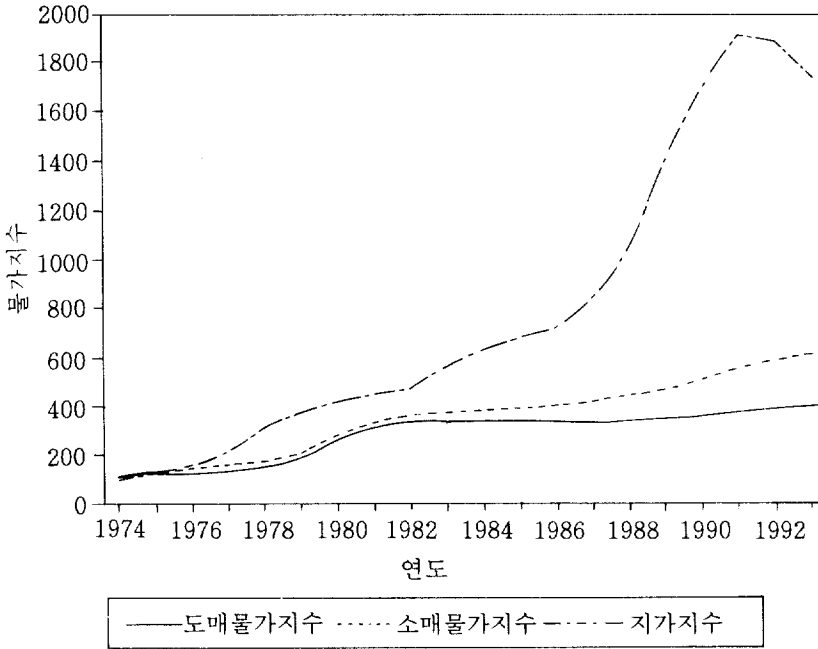
	도매물가지수	소매물가지수	지가지수
1974	100.0	100.0	100.0
1975	126.3	124.9	127.0
1976	131.8	144.2	160.8
1977	143.8	158.9	214.7
1978	160.6	181.7	319.9
1979	190.5	214.7	373.1
1980	264.6	276.6	416.6
1981	318.6	336.0	447.9
1982	333.6	359.9	472.1
1983	333.9	372.1	559.5
1984	336.5	380.7	633.3
1985	339.4	389.8	677.6
1986	334.7	400.5	727.1
1987	336.1	412.7	833.8
1988	345.3	442.1	1,062.8
1989	350.4	467.5	1,402.6
1990	365.0	507.6	1,691.2
1991	382.1	554.8	1,907.7
1992	390.5	589.3	1,882.9
1993	396.4	617.8	1,743.6

註：1. 각 지수는 1974년말을 100으로 하였음.

2. 지가지수는 전국평균 지가지수임.

資料：건설부, 『지가동향』, 각 연도.

〔圖 VI-1〕 物價指數와 地價指數의 變動推移



수 있고, 이에 따라 資本利得課稅를 回避할 수 있다.

1983년에 資産再評價法 改定을 통하여 토지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토지분 재평가차액은 개정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향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을 통한 재평가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再評價의 實態가 주로 土地에 偏重되어 있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만을 통한 재평가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表 VI-3>은 상장회사의 총 자본금 규모에서 減價償却 對象資産과 토지를 통한 재평가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減價償却 對象資産을 통한 재평가 차액은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이내이므로 재평가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表 VI-3〉 資産別 再評價差額과 資本規模

(單位 : 10억원, %)

	재평가차액의 총계		자본총계 (C)	A/C	B/C
	감가상각자산 (A)	토 지 (B)			
1991	750	3,299	42,654	1.8	7.7
1992	236	2,381	49,371	0.5	4.8
1993	1,096	4,892	55,596	2.0	8.8

註 : 자본총계는 상장회사만의 합계임.

기업의 입장에서는 資産再評價를 하는 대상이 土地에 偏重되어 있음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토지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71%의 기업이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資産再評價制度의 問題는 土地問題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의 한정된 토지자산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기업이 자산재평가제도를 통하여 적절히 운용할 수 있고, 그 비용은 社會費用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土地需要를 통한 국민경제의 왜곡을 방지하는 한도 내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적정수준의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耐用年數 短縮으로 인한 再評價 必要性的의 減少

1995년의 새로운 減價償却制度는 자산별 耐用年數를 대폭 단축하였다. 자산재평가제도는 비교적 耐用年數가 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는 적용되지만, 耐用年數가 짧아질 경우에는 制度의 有用성이 적다. 새로운 減價償却制度下에서 자산별 耐用年數가 얼마나 단축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또한 실제로 經濟的 耐用年數와의 괴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 運輸資産의 經濟적 耐用年數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玄鎭權(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운수자산의 耐用年數의 변화를 살펴보면 <表 VI-4>와 같다. 승용차의 경우 실제 經濟的 耐用年數는 7.9년이지만 舊減價償却制度下에서는 5년으로 규정되었으나, 新制度下에서는 3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승합차와 화물차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새로운 감가상각제도에서 耐用年數는 대폭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耐用年數가 대폭 단축된 자산의 경우는 資産再評價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

<表 VI-4> 運輸資産의 耐用年數의 變化

(單位: 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제적 내용연수	7.9	6.9	6.8
구제도의 내용연수	5	5	4
신제도의 내용연수	3	3	3

資料: 玄鎭權(1995).

라. 都賣物價指數 適用의 衡平性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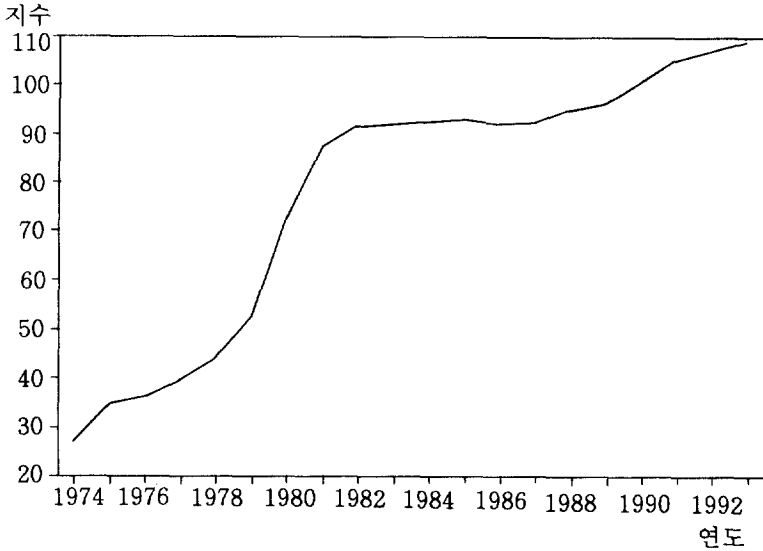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에서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도매물가지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 이러한 조건은 적용의 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항상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表 VI-5>와 [圖 VI-2]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6년에는 도매물가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4% 감소하고, 1987년에는 전년대비 0.4%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이 위배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1986년과 1987년에 資産再評價를 한 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累積都賣物價指數가 25% 상승되는 해에 再評價를 시행할 수 있으나, 1984년과 1985년에 再評價한 기업은 오히려 再評價를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긴다.

〈表 VI-5〉 年度別 都賣物價指數의 趨勢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1974	27.4	—
1975	34.6	26.3
1976	36.1	4.3
1977	39.4	9.1
1978	44.0	11.7
1979	52.2	18.6
1980	72.5	38.9
1981	87.3	20.4
1982	91.4	4.7
1983	91.5	0.1
1984	92.2	0.8
1985	93.0	0.9
1986	91.7	-1.4
1987	92.1	0.4
1988	94.6	2.7
1989	96.0	1.5
1990	100.0	4.2
1991	104.7	4.7
1992	107.0	2.2
1993	108.6	1.5

〔圖 VI-2〕 都實物價指數의 趨勢



다. 資産再評價 節次의 問題點

현행 資産再評價制度는 전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견해가 많다. 企業實態調査에 의하면 83% 가량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再評價時 기업의 行政費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재평가시 鑑定料가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감정에 대한 信賴度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재평가세율에 대해서도 높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模擬實驗 分析을 통한 결과 현행 3%의 자산재평가세율은 자본비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¹⁾. 자산재평가제도의 복잡성은 현

1) 뿐만 아니라 資産再評價稅率이 0~10% 사이에서는 기업의 자본비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資産再評價制度는 기업이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資本利得에 대한 特別附加稅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3%의 자산재평가세는 특별부가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資産再評價制度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현행 특별부가세 수준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資産再評價稅率을 대폭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행 資産再評價制度가 가지는 문제점 중에서 기업이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인 만큼 簡素化할 필요가 있다.

바. 稅務行政上의 問題點

현행 제도하에서 재평가를 시행하려는 기업은 稅務署에 신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에서 재평가의 행정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수는 많지 않으므로 세무서별로 재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매우 다양하며, 1~2개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재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재평가 업무에 대한 專門的인 知識을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재평가차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경우 業務用 土地에 대해서만 재평가가 허용되므로 업무용 토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은 행정력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資産再評價制度의 改善方向

資産再評價制度의 改善方向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재평가의 실태가 자산재평가의 목적을 잘 만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산재평가제도의 목적은 크게 ‘減價償却額의 現實化’와 ‘經營의 合理化’로 나눌 수 있다. 실증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감가상각액을 현실화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재평가하는 주된 대상이 土地資産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3년 기준으로 再評價差額의 80%는 土地로 인한 것이며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한 비중은 18%만을 차지할 뿐이므로, 재평가차액의 대부분은 토지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재평가액은 장부가액의 약 16.7배인 반면,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단지 1.7배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現行 資産再評價制度는 기업이 토지를 재평가함으로써 얻는 再評價差額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3년에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였으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1회의 재평가를 허용한 상태이므로 시간이 감에 따라 토지로 인한 재평가차액은 줄어들 것이다.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서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통한 재평가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減價償却 對象 資産을 통한 재평가차액은 上場會社의 총자본금의 2% 이내를 차지할 뿐이므로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財務構造 改善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자산만으로는 재평가를 시행할 유인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減價償却 對象土地에 대한 재평가는 그 규모가 얼마인가에 관계 없이 자산의 耐用年數가 비교적 긴 경우에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감가상각제도하에서는 자산별 耐用年數를 대폭 단축하였으므로 자산재평가를 시행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되었다.

현행 자산재평가제도하에서는 都賣物價指數가 25% 이상일 경우에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고, 1984년 이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한 한 번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는 1984년 이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 수년 이내에 재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이후로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거의 없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경우는 稅法上 耐用年數가 대폭 단축되어 재평가 실시 이전에 폐기될 것이므로 재평가에 적용되는 자산이 감소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合理的인 制度란 있을 수 없으므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에 따라 제도도 彈力的으로 運用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산재평가제도가 점차 활용도가 떨어진

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長期的으로는 현행 자산재평가제도하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점차 줄어들어 일정기간 이후에는 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도가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기업에서는 시행에 따른 이익이 없으므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가 활용되지 않을 때는 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영구법으로 제정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자산재평가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화로 야기되는 企業間의 水平的 衡平性 問題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²⁾. 즉 재평가를 통해 혜택을 본 기업과 향후 재평가를 시행하려는 기업이 제도의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정책변화로 인해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므로 5년 이내의 일정한 猶豫期間을 통하여 재평가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強制的으로 하게 하고 永久法을 廢止함이 바람직하다.

향후 經濟環境이 달라져 인플레이 수준이 높아질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資產再評價制度를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當爲性이 제기될 수 있다. 이때는 자산재평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모든 기업을 강제적으로 재평가하게 하여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재평가 대상자산도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지만, 건물·구축물 및 토지 등 내용연수가 긴 자산에만 적용하더라도 모든 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行政費用과 納稅協力費用은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Nozick(1974)는 제도의 변화로 인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과정의 중요성은 水平的 衡平性이란 개념으로 많은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데 실증적으로 응용되었다.

Ⅶ. 結 論

1965년에 영구법으로 제정된 자산재평가제도의 목적은 ‘減價償却額의 現實化’와 ‘經營의 合理化’이다. 지금은 이런 목적으로 30여년간 운용된 자산재평가제도가 본래 목적에 충실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標本資料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산재평가제도는 財務構造의 改善效果는 있지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減價償却額을 現實化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平均 自己資本率이 11.9%에서 16.5%로 4.6% 상승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3.6%에서 3.4%로 미미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效果는 자산재평가차액을 통해 나타나는데, 자산재평가차액에서 토지분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은 대부분 土地에 偏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土地價格 上昇率이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993년의 경우 再評價額의 帳簿價額에 대한 비율이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1.7배인 반면, 토지는 16.7배였다.

資產再評價는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1984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 번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시간이 지난 후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된 시점에는 기업이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企業調査에 의하면 전체 기업의 71%가 기업이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재평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減價償却 對象資産의 경우는 재평가를 활용할 자산이 대폭 감소

되었다. 즉 1995년에 시행된 새로운 감가상각제도에서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세법상 耐用年數가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재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자산범위가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이다.

資産再評價의 對象資産인 土地資産과 減價償却 對象資産은 향후 재평가 대상에서 대폭 縮小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제도가 활용되지 않은 상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자산재평가제도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無用한 制度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구태여 영구법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영구법에서 폐지하고, 장래 經濟環境이 변하여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일정 기간에 모든 기업이 강제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郭泰元, 『減價償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 韓國開發研究院, 1985.
- 潘先燮, 「上場企業의 資產再評價 動機에 關한 實證的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6.
- 申東領, 「韓國製造企業의 財務構造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經營學研究』, 第21卷 第1號, 韓國經營學會, 1991. 11.
- 全春玉, 「資產再評價制度에 對한 再評價」, 『稅務學研究』, 第6號, 韓國稅務學會, 1995.
- 鄭濬基, 「우리나라의 資產再評價制度와 上場企業의 資產再評價實態에 關한 實證的 研究」, 『稅務學研究』, 第4號, 韓國稅務學會, 1993. 6.
- 趙賢衍, 「資產再評價情報의 有用性에 關한 研究」, 『經營學研究』, 第17卷 第1號, 韓國經營學會, 1987. 9.
- 許成寬·丁新作, 「資產再評價 公示의 情報效果와 그 要因」, 『稅務學研究』, 第10號, 韓國稅務學會, 1990. 9.
- 韓國上場會社協議會, 『資產再評價制度의 存廢에 關한 研究』, 上場協 研究報告書 94-3, 1994. 11.
- 玄鎮權, 「運輸資產의 生存行態 分析」, 未發表 論文, 1995.
- , 『減價償却의 現況과 政策方向』, 研究報告書 94-06, 韓國租稅研究院, 1994a.
- , 「市場價格資料를 使用한 運輸資產의 經濟的 減價償却率 測定」, 『財政金融研究』, 第1卷 第1號, 韓國租稅研究院, 1994b.
- Emanuel, D. M., "Asset Revaluations and Share Price Revision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Vol. 16, No. 2, Spring 1989.

Hall, Robert and Dale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1967.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 Basic Books, 1974.

Standish, Peter E. M. and Swee-Im Ung, "Corporate Signaling, Asset Revaluations and the Stock Price of British Companies," *Accounting Review*, Vol. 57, No. 4, October 1982.

附 錄

附錄 I：日本の再評價額과 帳簿價額の比較

附錄 II：企業實態調査 調査表

附錄 I : 日本의 再評價額과 帳簿價額의 比較

〈附表 I - 1〉 日本의 再評價額과 帳簿價額의 比較

(單位 : 億엔, 倍)

	주 식			토 지			주식+토지		
	장부가액	재평가액	B/A	장부가액	재평가액	B/A	장부가액	재평가액	B/A
	(A)	(B)		(A)	(B)		(A)	(B)	
1984	31.7	75.5	2.38	58.5	231.5	3.95	90.2	307.0	3.40
1985	35.5	88.3	2.49	69.0	252.9	3.67	104.3	341.2	3.27
1986	42.2	141.1	3.34	80.0	318.6	3.98	122.2	459.7	3.76
1987	60.7	181.3	2.99	107.5	433.0	4.03	168.2	614.3	3.65
1988	70.4	250.7	3.56	114.9	487.6	4.24	185.2	738.3	3.98
1989	81.0	339.7	4.19	129.9	582.1	4.48	210.9	921.8	4.37
1990	91.3	236.1	2.59	138.7	632.0	4.56	230.0	868.1	3.77
1991	98.5	227.5	2.31	161.9	602.9	3.72	280.4	880.4	3.19

附錄 II : 企業實態調查 調查表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표

調查機關：大韓商工會議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재평가제도의 존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기업자료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답변하신 자료는 향후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는 기업의 일반적 특성, 자산재평가 관련 사항, 그리고 199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가상각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 사 명	부 서 명	직 급	응답자명	연 락 전화번호

I. 기업의 일반적 특성(1994년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액	백만원	자 산 총 계	백만원
당기 순이익	백만원	설 립 연 도	년
자 본 총 계	백만원	업종(자세히)	

II. 자산재평가 관련사항

문1) 귀사는 설립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실시한 경험이 있다. (2) 실시한 경험이 없다.

→ 문10)으로 가시오.

문2) 자산재평가는 언제 실시하였습니까? 설립 이후 실시한 연도는 모두 적어주십시오.

년	년	년	년	년	년
---	---	---	---	---	---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문4)로 가시오.)

문3) 귀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 실시한 경험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자산재평가 실시연도		년	자산재평가 차액의 처분내역	자본전입액	백만원
자본총액	실시직전연도	백만원		이월결손금	백만원
	실시연도	백만원		보전액	백만원
자산총액	실시직전연도	백만원		환율조정계정 상의 상계금	백만원
	실시연도	백만원	기 타	백만원	
자산재평가 차액		백만원			

문4) 현행 자산재평가제도하에서 재평가 대상자산은 크게 토지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때 토지자산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문5) 만약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귀사는 재평가를 시행하시겠습니까?

(1) 할 것이다 (2) 하지 않을 것이다 (3) 모르겠다

- 문6) 현행 자산재평가 세액은 자산재평가 차액의 3%입니다. 귀하는 현행 자산재평가 세액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높다 (2) 약간 높다 (3) 적당하다
 (4) 약간 낮다 (5) 너무 낮다
- 문7) 자산재평가 실시로 재평가 의뢰기관에 감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감정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많다 (2) 약간 많다 (3) 적당하다
 (4) 약간 적다 (5) 너무 적다
- 문8) 귀하는 자산재평가 기관의 재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확하다 (2) 잘 모르겠다 (3) 정확하지 않다
- 문9) 현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마지막 자산재평가 이후 도매물가 상승률이 25% 이상 상승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도매물가상승률이 25% 상승하자마자 곧바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1) 바로 실시했다 (2) 바로 실시하지 않았다
- 문10) 만약 도매물가상승률이 25% 이상 상승하였는데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자산재평가 실시 절차가 복잡하여
 (2) 현 상태의 재무구조에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3)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문11) 또한 재평가 실시기간 동안 관련직원들이 자산재평가 준비와 실시를 위한 정상업무외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 시간과 비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많다 (2) 약간 많다 (3) 적당하다
 (4) 약간 적다 (5) 너무 적다

- 문12) 현행 자산재평가제도는 누적 도매물가가 25% 이상 상승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도매물가지수 2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높다 (2) 약간 높다 (3) 적당하다
 (4) 약간 낮다 (5) 너무 낮다
- 문13) 현행 자산재평가제도하에서는 재평가의 임의성 때문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과 실시하지 않은 기업간의 재무제표를 상호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귀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상관 없다 (2) 잘모르겠다 (3) 잘못되었다
- 문14) 현행 자산재평가제도하에서 재평가 절차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복잡하다 (2) 약간 복잡하다 (3) 적당하다
 (4) 약간 간단하다 (5) 너무 간단하다
- 문15) 귀사는 현행 자산재평가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3) 존속하되 개정해야 한다
 (4) 모르겠다

Ⅲ. 새로운 감가상각제도

다음은 1995년에 개정된 새로운 감가상각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가상각제도는 1995년부터 자산의 잔존가액을 폐지하고, 내용연수를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 문1) 1995년부터 시행되는 감가상각제도를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만 (2) 약간 불만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문2) 새로 시행되는 감가상각제도로 귀하의 경리업무가 어느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 (1) 매우 감소 (2) 약간 감소 (3) 그저 그렇다
- (4) 약간 증가 (5) 매우 증가

문3) 새로운 감가상각제도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IV. 마지막으로 재산재평가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십시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respondent to write their suggestions regarding the property revaluation system. The box occupies most of the lower half of the page.